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마련 연구

- 사회복지사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

2017. 11.

연구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책임연구원 : 남석인(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종화, 허수임, 김수연 (연세대학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마련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목 차

연구요약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5

제2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7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7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구조	17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관련 사례 분석	26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문제점	35
제2절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분석	42
1. 영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42
2. 미국(뉴욕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51
3. 일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58
4. 호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질 관리	63
5. 소결	69
제3절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	73
1.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73
2. 교육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90
3. 법조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102
4. 소결	110

목 차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연구결과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112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및 개요	112
2. 초점집단면접조사 도출 개념	113
3.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115
4. 소결	138
제4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제1절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142
1.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	144
2. 통합접수처의 기능	145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회원징계 방안	146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체계 : 보건복지부	148
1.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148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제한적 적용	150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심의절차	151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효력 발생	153
제3절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4
1.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 절차	155
2. 장기적 개선방향 제언	156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160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개선방안	162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연구흐름도	6
표 2.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도 관련 주요개정 사항	9
표 3. 한국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10
표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도별 발급 현황(누계)	11
표 5. 2017년 자격증 발급 누계 현황	11
표 6.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13
표 7.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	14
표 8.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현황(2014년 기준)	15
표 9.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16
표 10. 업무수행 관련 자격 정지, 취소 세부기준 :	19
표 1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 절차	22
표 12. 법률적 판단	22
표 13. 연도별/등급별 자격증 취소 현황	24
표 1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 연도별 총계 및 평균	25
표 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26
표 16. 현행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36
표 17. 영국 사회복지사 양성 기관 교육 및 훈련 기준	43
표 18. 사회복지사 민원 제기 문제의 유형	46
표 19. 사례 유형에 따른 담당 패널	47
표 20. 미국 숙련 사회복지사(LMSW) 자격 요건	52
표 21. 미국 임상 사회복지사(LCSW) 자격 요건	52
표 22. 2017년 뉴욕주 사회복지사 정계 사례	56
표 23. 일본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 개요	58

표 목 차

표 24. 일본 사회복지사 징계의 종류 및 기준	62
표 25. 호주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인증 기준에 의한 졸업생 학습 결과	64
표 26. 의료인 면허신고제 근거법령 요약	79
표 27.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84
표 28. 최근 의사의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	87
표 29. 징계사유가 되는 교원의 비위 유형	93
표 30.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교부절차	97
표 31. 변호사법 제 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104
표 32.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117
표 33.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	114
표 34. 사회복지사의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비교	149
표 35. 사회복지사 회원징계 유형 및 기준(안)	156

그 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자격 발급 현황	12
그림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23
그림 3. 대한민국 자격제도 현황	35
그림 4. 호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인증 마크	64
그림 5. 의료인 행정처분 절차	83
그림 6.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처분 절차	101
그림 7.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모델	143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정 복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수요계층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비공공부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기업, 학교, 병원, 군대 등에도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보육시설, 복지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7년 10월말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93만 건에 이르고 매년 7만5천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신규 공급되고 있음. 이러한 양적 성장은 사회복지현장의 발전을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휴먼서비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갖는 높은 윤리적 책무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의한 횡령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손해, 비윤리적 실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가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가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 직능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관련 법률이 신설됨.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의 대여·양도 및 위·변조한 경우,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나 법의

▶ 연구요약

효력을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구분	우선과제
세부기준	-‘고의’, ‘중대한 과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주 설정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매뉴얼 확립
질 관리	-결격사유를 상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창구 마련 -윤리가치와 직업적 자유 충돌 중재방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법적용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적 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연구방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위임내용이 없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취득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 실무행정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임
 -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법적 판단 이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 즉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범위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석 체계를 살피고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 토양에 맞는 법률 개정 및 시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이로써,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적용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및 절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이후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P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해 문헌연구에서 탐색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논의함
-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효력의 문제점과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매뉴얼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함. 현행법 상 자격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절차와 방안을 위한 운영방안 세부 매뉴얼을 구성하고, 수행 주체별로의 세부 지침 근거를 마련함

▶ 연구요약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분석	<p>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심층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구조 등 현황에 대한 행정자료 분석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례 검토	<p>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례 및 현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 및 원인에 따른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요인 파악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및 전문 집단 심층면접	<p>초점집단면접조사(F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로 구성- 문헌연구에서 탐색하기 어려운 자격취소 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논의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제시	<p>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의 세분화- 수행 주체 별 세부지침 근거 마련
자격제도 개선 방안 매뉴얼 법률적 검토	<p>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매뉴얼에 대한 법률적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효력에 대한 도입효과 및 문제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매뉴얼의 합리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제2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현황분석

□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보건의료영역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1970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 설치함.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으로 개정하고, 1999년 입학생부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함.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교육의 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932,441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됨. 수요의 규모에 상관없는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최근 사회복지사 3급 제도를 폐지하게 됨
-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의 대여·양도 및 위·변조한 경우,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현행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 조회를 개별 요청해야 하는 등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망 사용이 제한적임. 의무고용형인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문가단체의 회원 자격이 아닌 시장(채용권한이 있는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 의해 경제활동을 통제받기 때문에 회원 제명을 한다 해도 사회복지사로서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 또한, 법조문은 규제(정지 및 취소) 받은자의 복권 절차 등 출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연구요약

□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분석

- 국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의 사례로 영국, 미국, 일본, 호주를 살펴봄
-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전일제 기준 3년의 학부과정, 200일 이상(일 근무 시간 6~7시간) 수퍼비전이 제공되는 실습이 요구됨. 전문직 위원회를 통해 자격관리가 되며, 자격에 대한 제재는 실천 적합성에 위배되는 경우 이루어지는데,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제기자의 정보는 민원 제기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음. 조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역량 위원회나 건강 위원회의 패널 등에 의한 심리를 진행하고 해당 심리는 전문직 위원회 산하의 보건의료 및 돌봄 전문가 재판소에서 진행되며 이 패널에 의해 등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고, 실천 수행 조건 부여, 등록 유예, 등록 취소 등의 판정이 내려짐
- 미국은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같은 공익적 역할이 아닌 일종의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자리함. 그 중 뉴욕의 경우, 인준된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900시간 실습을 끝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할 수 있고 3년마다 자격 갱신이 필요함. 갱신 시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수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보수교육이 요구됨.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는 뉴욕 주정부 교육부 산하 전문직 사무소 산하에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 수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정행위 시 규제를 당함.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조사는 대부분 9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오래 걸리는 경우 2년까지 진행됨. 서면경고, 행정경고, 벌금, 자격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며 자격 정지를 받은 경우 회복 신청까지 약 3년이 소요됨
- 일본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복지사, 인정 사회복지사, 인정 상급 사회복지사로 나뉨. 자격제도의 경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따라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 취소 및 정지의 권한은 후생노동성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징계는 일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불만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데,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와 함께 불만의 내용과 사유 발생 시기 등을 적시해야하며 징계의 종류는 훈고, 계고, 제명 세 가지가 있음. 징계 처분의 경우 일본 사회복지사 협회에 보고하며 징계 사항을 공개하게 되어있음
- 호주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서비스간의 촉진자로 활동하며

대부분의 경우 보건의료의 연속선상이나 공공 행정 분야에 상당수가 종사하며 최근 개업 사회복지사도 늘고 있음. 하지만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아직 없어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전문직에 대한 ‘국가 등록 및 인증 제도(NRAS)’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인증 마크, 학위, 불만 절차를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하는 캠페인을 전개 중임. 사회복지사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윤리 불만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윤리 강령을 참고로 비위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음. 비위행위는 국가 윤리 패널 및 의장이 판단하며, 신고인 및 피 신고인에 대한 개인 정보는 협회에서 보호하며 판결에 따라 기각, 벌금, 조건부 실천, 공식 견책 및 경고 최대 사회복지사 회원 자격 정지나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국가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위상은 매우 다르며 자격 제재 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 이는 문화권이나 지리적 배경의 차이 혹은 활동 영역의 차이가 아닌 나라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위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간적 위치로서 이미 다양한 자격제도를 기반으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현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

-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사례로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법조분야 자격제도를 살펴봄
-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의료인의 경우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 시에는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현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미신고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짐. 의료인의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자격 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부당이득금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등이 있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금지됨. 따라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됨. 행정처분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 의료인 면허제도는 청문 실시 의무화, 전문직의 자율규제 보장, 의사면허관리제도의

▶ 연구요약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분야의 경우, 교사는 자격관리를 위해 징계제도를 두고 있음.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수행되는데 여기서 징계사유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사유로 삼은 교원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말함. 교사 징계제도는 교사와 관리자 간 징계 양정의 균형, 강등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검토,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보 공개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분야 중 보육교직원은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함. 보육교사는 법률에 나타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한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해야 함. 이러한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짐
- 법조분야의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자격 관리를 하고 있음.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심으로서 모든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징계권자가 등록취소, 직무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계의 양정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임.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직능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직능별로 독립된 의결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제3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 초점집단면접조사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집단과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2개 집단을 각 1회에 걸쳐 진행하였음
- 녹취된 자료를 일차 분석 후 선별된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범주 및 주요개념을 도출하였음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징계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음. 인터뷰 내용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금전적 비리, 성 범죄, 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민·형사상 범죄 외에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위반이나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 품위유지 위반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이러한 징계제도가 부적격자를 걸러냄으로써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오고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징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무고한 희생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신고접수절차를 엄격히 하고, 판정을 내리게 되는 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 자격 정지와 취소 못지않게 그에 따른 사후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음.
 -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계제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의 인식 제고를 도모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격취득 절차부터 엄격성을 기하고 자격갱신제도를 통해 전문직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연구요약

상위범주	개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한 금품수수 ② 성폭력 및 성희롱 ③ 클라이언트 인권침해 및 학대 / 폭력 ④ 불성실 및 전문성의 부족 ⑤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위반 ⑥ 공공자원의 사유화 ⑦ 품위유지 위반 ⑧ 기타 모호한 영역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성의 제고 ② 자정기능 강화
제도운영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고한 피해자 방지대책 마련 ② 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 확보 ③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위원구성 ④ 책무와 권리의 균형 필요 ⑤ 윤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⑥ 철저한 비밀 보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효력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 ② 맞고소의 가능성
장기적인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의 강화 ② 자격취득 절차의 강화 ③ 자격갱신제도 도입

제4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 사회복지사의 실천행위는 국가자격부여라는 자격관련성, 그리고 기관 내에서의 업무수행이라는 과정성 등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이러한 실천의 장에서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용이 발생함.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위임된 국가책임의 불이행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러한 실천오류는 전문성이나 실천기술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에서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가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 특히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를 포함한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위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통합적으로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수창구로서 통합접수처 마련이 필요함.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비윤리적 실천행위의 부분집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접수 창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합접수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통합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모든 사안들을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함. 이 때 의뢰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완료되어 형량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일차적으로 고용주, 지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 의해 해당 사안에 대한 포착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짐
 - 둘째,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확인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행위는 주로 내부 공익제보자나 동료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 시설 생활인 등에 의해 제보될 수 있음
- 통합접수처의 기능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한 일차적 상담과 자문기능, 일차적 조사기능이 있음. 통합접수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접수전문가는 일차적인 조사상담과 대응을 담당하

▶ 연구요약

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전문분야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체계와는 별도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해당 사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징계체계에서 심사 및 회원 자격의 징계처분 절차를 수행하도록 함. 회원징계체계의 실질적 권한은 행정처분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며, 비록 자격 정지 및 취소가 사법대응체계에서 기각되더라도, 회원의 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체계 : 보건복지부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첫째,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민·형사상의 입증된 손해, 즉 구금 혹은 벌금형 선고와 확정이 이뤄질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 함. 손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의 관련성”은 통합접수처에서 의뢰 시 접수처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사회복지사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대책과 자격의 질 관리 노력이 제도도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최후적 수단으로서 자격의 정지와 취소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현행법 상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제한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법률 상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 행정처분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선행되는 구조임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심의기구를 구성함. 심의기구에서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접수 사안에 대한 조사, 청문 및 징계절차 진행, 행정처분 요청 및 통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함.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요건 충족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분의 엄격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사 당사자와 고용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사회복지사 자격의 취소결정은 고용조건이 자동 소멸되므로 고용기관에서는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동 해고가 결정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시 고용조건의 일시정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직무 배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을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은 통합접수처에서 윤리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윤리위원회가 사례에 대한 접수를 통해 개시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윤리적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산하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원 징계심사의 권한을 갖도록 함. 단, 윤리위원회가 단순히 징계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와 자문, 국제교류, 윤리강령 개정 등과 같은 다양한 폭넓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산하에 징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에서 회원징계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며, 윤리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도록 함
- 징계위원회는 제보사안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임. 통합접수처에서의 일차조사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필요 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안 별로 분야 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풀을 구성하고 필요 시 자문을 요청하여 회원 징계처분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도록 함. 또한, 궁극적으로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자격관리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연구요약

□ 장기적 개선방향 제언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절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고용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과 같은 포괄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제5장 결론 및 제언

□ 연구결과

-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 이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남
- 국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례를 미국, 영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봄. 영국과 미국은 자격제도 운영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음. 반면,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격제재 체계도 명료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정노력에 한정되어 있었음
- 타 전문분야의 자격제도를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법조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 타 전문분야는 청문절차의 확대도입, 징계위원회 구성요인의 다양성 확보, 징계종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리적, 법적, 위반사례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초점집단면접의 분석 결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자격 정지 및 취소를 비롯한 징계제도가 부자격자를 걸러냄으로써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오고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징계제도의 신중한 도입과 엄격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함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 자격 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성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개선방안

- 연구결과에 기반 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통합접수처를 마련하여 모든 사안들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

▶ 연구요약

부 차원의 심의의결기구와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윤리위원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원 징계심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 함
-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질 관리의 측면, 법제도 개정의 측면, 시스템 보완 의 측면에 대하여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질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복 지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함

제 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가정 복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복지 등 수요계층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에서도 “사회복지분야 부처가 활성화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며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공공부분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학교, 병원, 군대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공공부문, 보육시설, 복지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월말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93만 건에 이르고 매년 7만5천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신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은 사회복지현장의 발전을 견인한 측면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휴먼서비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갖는 높은 윤리적 책무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의한 횡령 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손해, 비윤리적 실천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가 보다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가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 직능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범죄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1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해 명시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지만, 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몇 가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자격 규제의 세부기준은 현행법이 정하고 있긴 하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상태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등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데다, ‘고의’, ‘중대한 과실’, ‘다른 사람에게 손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주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관련 세부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 정지 시 처벌 가중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실행 매뉴얼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다.

셋째,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 관리를 목표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공개·제공 범위 등을 밝혀 실제 규제 적용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전문자격으로서의 윤리적 가치와 개인의 직업적 자유가 충돌했을 때의 중재방안도 고려하는 등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적 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보건분야 및 교육 분야의 자격 관리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위임내용이 없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취득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 실무행정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세부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법적 판단 이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 즉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 범위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석 체계를 살피고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 토양에 맞는 법률 개정 및 시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적용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세부 매뉴얼을 제시하여 법적용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문헌 분석,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에 따라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지침, 절차 및 구조 등을 검토하였고, 현황 및 실적에 대한 행정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례를 찾아내어 총체적 분석을 통해 자격 정지 및 취소 사례에 대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요인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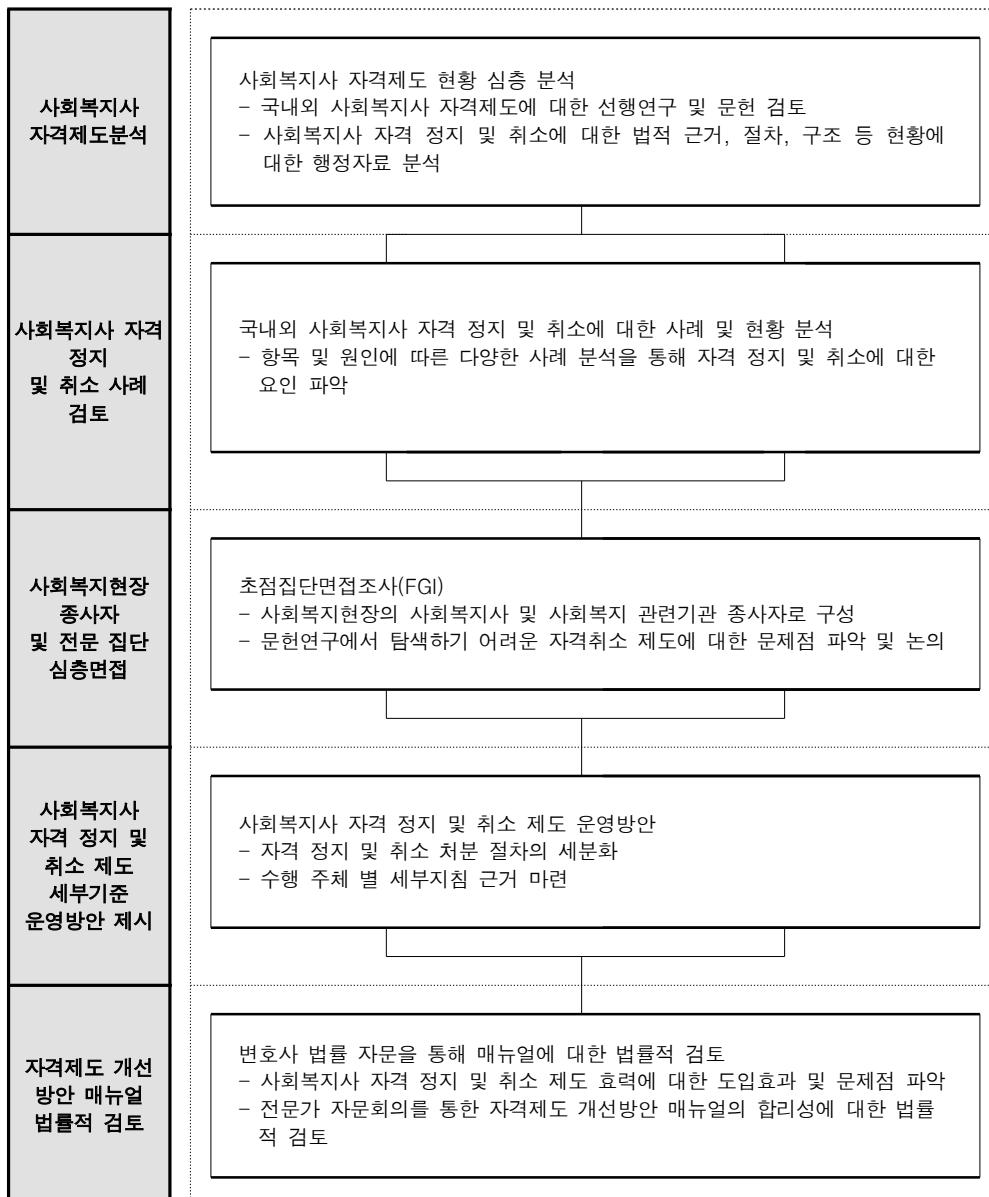
셋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과 현장의 경험과 대처를 살펴보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한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로 탐색하기 어려운 자격취소 제도에 대한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격취소 제도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넷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 자격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세부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 절차 및 방안을 세분화하고, 수행 주체별로의 세부 지침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효력의 문제점과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자격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매뉴얼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성에 대하여 법률

직으로 검토하였다.

표 1. 연구흐름도



제 2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1) 사회복지사의 정의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일반영역 중 공적사회복지영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 보건의료영역 등을 포함한다. 그 중 공적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영역은 지역복지사업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영역은 의료법,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소지는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당 활동가까지 다양한 복지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경우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9조에 의거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규정으로 시작하며, 1989년 현행 ‘사회복지사 1·2·3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대학에서 4년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종사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198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자격으로 개정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1996년 신설 부여하였다.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은 1998년 전문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1999년 입학생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법제도를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자격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도 관련 주요개정 사항

구분	주요개정 사항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시험 실시(2003년부터 시행)○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전문대 졸업자 자격등급 상향조정(3급>2급)○ 승급요건 중 실무경험기간 축소(5년>3년)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학위자 필수과목 요건에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변경(필수 3과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학점 및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명시 (2010년부터 시행) - 교과목 학점 기준 규정 : 과목당 3학점 이상 - 실습기관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자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이수과목의 변경 및 학점 요건 규정(2010년 이후 입학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6 및 선택 2(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 전문대학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10 및 선택 4(과목당 3학점) 이상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 적용 시작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제 11조의 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취소를 당할 경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 반납 ○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 마련(제 11조의 4 신설)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등급 촉소(1,2,3급 > 1,2급) ○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자격이 되지 않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증 재발급 불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당일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가. 사회복지사의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를 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교육의 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즉, 이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필수과목은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과목은 4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원(전공이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어야 함)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과목은 2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2010년 입학생부터 이수교과목의 학점 기준은 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다.

표 3. 한국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나. 사회복지사의 양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의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10월 말 기점으로 총 932,441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다. 하지만 이 인력은 지난 30여 년 간 일정수준으로 배출되었던 것과 달리 대학을 위시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의 공급체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배출규모 또한 무분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도별 발급 현황(누계)

(단위:건)

연도	총 계		1 급		2 급		3 급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당해연도	누계
2011	69,992	482,807	3,635	94,623	66,164	375,776	193	12,408
2012	77,723	560,530	9,834	104,457	67,722	443,498	167	12,575
2013	77,087	637,617	6,060	110,517	70,847	514,345	180	12,755
2014	75,606	713,224	6,377	116,894	69,058	583,404	171	12,926
2015	75,848	789,071	6,783	123,677	68,871	652,274	194	13,120
2016	75,198	864,269	9,528	133,205	65,508	717,782	162	13,282
2017 ¹⁾	68,172	932,441	5,435	138,640	62,621	780,403	116	13,398

표 5. 2017년 10월말 현재 자격증 발급 누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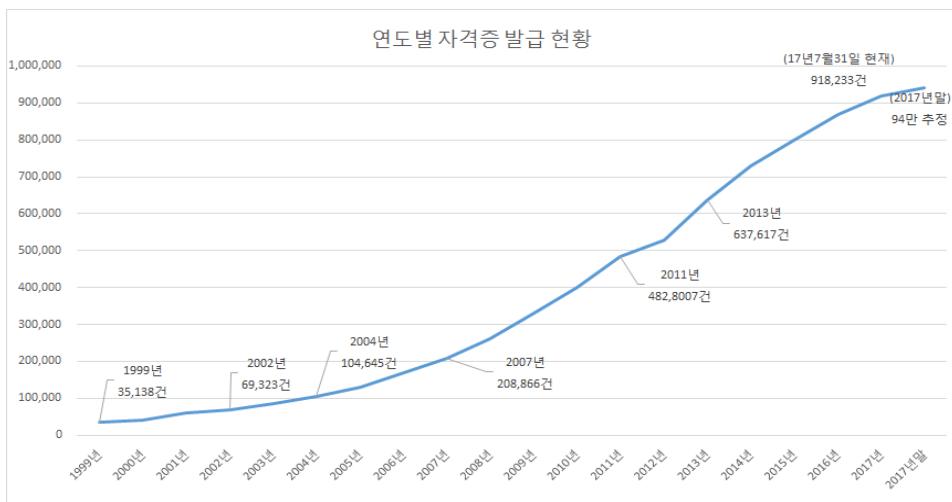
(단위:건)

구 분	1 급	2 급	3 급	총 계
발급수	133,640	780,403	13,398	932,441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내부자료

1)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 현황 내부자료 (2017년 10월 말 기준)

그림 1. 연도별 자격 발급 현황



다. 사회복지사 등급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은 1, 2, 3급으로 나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구분 된다.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원이나 대학 졸업예정자이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수과목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주어진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양성교육과정수료자는 졸업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까지 1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승인된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을 가졌을 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²⁾은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할 경우에 부여되며(이수과목 심의 필),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특정 사회복지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부여된다.

2)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표 6.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2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사회복지사3급③)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3)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개정일 2017.10.24./ 시행일 2019.1.1.)으로 사회복지사 3급제도가 폐지됨

1급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은 크게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로 3과목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과목마다 세분화된 시험영역들이 있다.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별 30문항 씩 출제되었으나 2014년(제12회)부터 각 영역별 25문항으로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하는 것을 합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7.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

회차	시행 년도	수험자현황			합격자	합격률	비고
		대상	응시	결시			
제1회	2003년	6,069	5,190	879	3,487	67.19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시행
제2회	2004년	9,082	7,233	1,849	4,543	62.81	
제3회	2005년	10,287	8,635	1,652	3,731	43.21	
제4회	2006년	14,617	12,151	2,466	5,056	41.61	
제5회	2007년	20,580	16,166	4,414	4,006	24.78	
제6회	2008년	27,017	19,493	7,524	9,034	46.34	한국산업 인력공단 시행
제7회	2009년	29,770	22,753	7,017	7,081	31.12	
제8회	2010년	26,587	23,050	3,537	9,700	42.08	
제9회	2011년	25,471	21,868	3,603	3,119	14.26	
제10회	2012년	28,143	23,627	4,516	10,254	43.39	
제11회	2013년	25,719	20,544	5,175	5,809	28.27	
제12회	2014년	27,882	22,600	5,282	6,364	28.15	
제13회	2015년	26,327	21,393	4,934	6,764	31.61	
제14회	2016년	25,949	20,946	5,003	9,846	47.01	
제15회	2017년	24,674	19,514	5,284	5,250	26.90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내부자료

현재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한해 사회복지전공 졸업생이 12만여 명이 넘을 만큼 그 공급량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수요를 압도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사회복지관련 전공이 개설된 학과의 수는 2년제 전문대학(사이버 포함)에서 114개, 4년제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162개, 대학원과정에서 254개로 재학 중인 학생 현황은 196,3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8.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학생현황		
	대학	학과(전공)	계	신입생인원	재적인원
총계	530개	890개	196,359	51,998(26.5)	144,361(73.5)
전문대학	112개	221개	79,691	27,547(34.6)	52,144(65.4)
사이버전문대학	2개	3개	2,766	1,060(38.3)	1,706(61.7)
대학교	147개	313개	64,584	10,315(16.0)	54,269(84.0)
사이버대학교	15개	28개	37,157	13,076(35.2)	24,081(64.8)
대학원	254개	325개	12,161	-	12,161(100.0)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5), 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 및 훈련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p.24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가 해마다 배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1차 공급기제로서의 교육영역의 최대 이슈는 고등교육기관의 난립과 인력의 확대 배출일 것이다.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양성과정)이 배출하고 있는 인력은 그 수요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공급과다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이기영·최명민, 2006). 실제로 학력별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400,822명으로 56.2%를 차지할 뿐이며, 학점은행 양성교육, 기타 관련 자격 취득자가 43.8%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 공급과잉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은 무의미한 등급 구분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구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의 급증으로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25%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여 2016년 현재 75만 개의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2016년 한 해에만 약 6만5천여 명의 2급 자격자를 배출하였다. 2급 자격증은 2005년부터 1급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전체 배출 된 사회복지사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1급 자격자는 약 3배 증가하였으나, 2급 자격자는 20배가 넘는 경이로운 증가 추세를 보였다(이봉주 외, 2011). 2016년 기준으로 발급된 1급 자격증은 9천5백여 개, 2급 자격증은 6만5천여 개로 거의 7배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격증의 과다공급, 교육기관 난립, 2급 자격자가 2급을 지도하는 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9. 사회복지사 자격증 학력별 발급 현황

(단위 : 건, %)

학력 단위	급수	1급		2급		3급		소계	
		건	(%)	건	(%)	건	(%)	건	(%)
정규 교육 과정	전문대학	6,370	0.68	249,964	26.81	294	0.03	256,628	27.52
	대학교	63,190	6.78	147,928	15.86	190	0.02	211,308	22.66
	대학원	4,742	0.51	19,079	2.05	29	0.00	23,850	2.56
	외국대학	94	0.01	259	0.03	2	0.00	355	0.04
	소계	74,396	7.98	417,230	44.75	515	0.06	492,141	52.78
학점 은행	전문대학	7,658	0.82	139,515	14.96	147	0.02	147,320	15.80
	대학교	1,933	0.21	21,951	2.35	1	0.00	23,885	2.56
	시간제	3,787	0.41	128,972	13.83	3	0.00	132,762	14.24
	소계	13,378	1.43	290,438	31.15	151	0.02	303,967	32.60
양성교육		179	0.02	2,270	0.24	2,254	0.24	4,703	0.50
기타		50,687	5.44	70,465	7.56	10,478	1.12	131,630	14.12
총계		138,640	14.87	780,403	83.69	13,398	1.44	932,441	100.0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내부자료

한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비전문성으로 인해 학생지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위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교육제도 체계도 부적절하여 부실교육이 초래됨을 지적하였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2급 및 3급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받고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여러 이유로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개정일 2017.10.24./ 시행일 2019.1.1.)으로 사회복지사 3급제도도 폐지되었다.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구조

1)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개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신설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에 대한 세분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할 경우, 혹은 그 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경중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사회복지

사는 국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이다. 「자격 기본법」 제16조(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에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시행령 제25조를 통해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은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에 자격 취소 및 정지와 관련하여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은 11조 3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 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표 10. 업무수행 관련 자격 정지, 취소 세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2] 2호 개별기준 종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자격취소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무거운 처분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 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되되,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 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처분 기준이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자격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4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2) 별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취소
마. 자격 정지 처분을 3	법 제11조의3			

<p>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p>2)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바. 자격 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제1항제5호</p> <p>법 제11조의3 제1항제6호</p>	<p>자격취소</p> <p>자격 정지 6개월</p> <p>자격취소</p>	<p>자격취소</p>	
---	--	--	-------------	--

2)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절차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법제화 이전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교육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며, 관련부처 및 자격제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취소여부를 판단했다. 당사자에게 자격 취소 예정 및 이의신청을 안내한 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종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

표 11.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 절차

복지부, 관련기관 (수사기관, 감시원 등)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해당자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or 보건복지부
취소자 명단 통보	<p><사례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육기관에 사실확인 • 법률 근거 검토 • 관계부처와 논의 • 자격제도위원회 논의 	자격취소예정 및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내용 검토	자격 취소 및 자격증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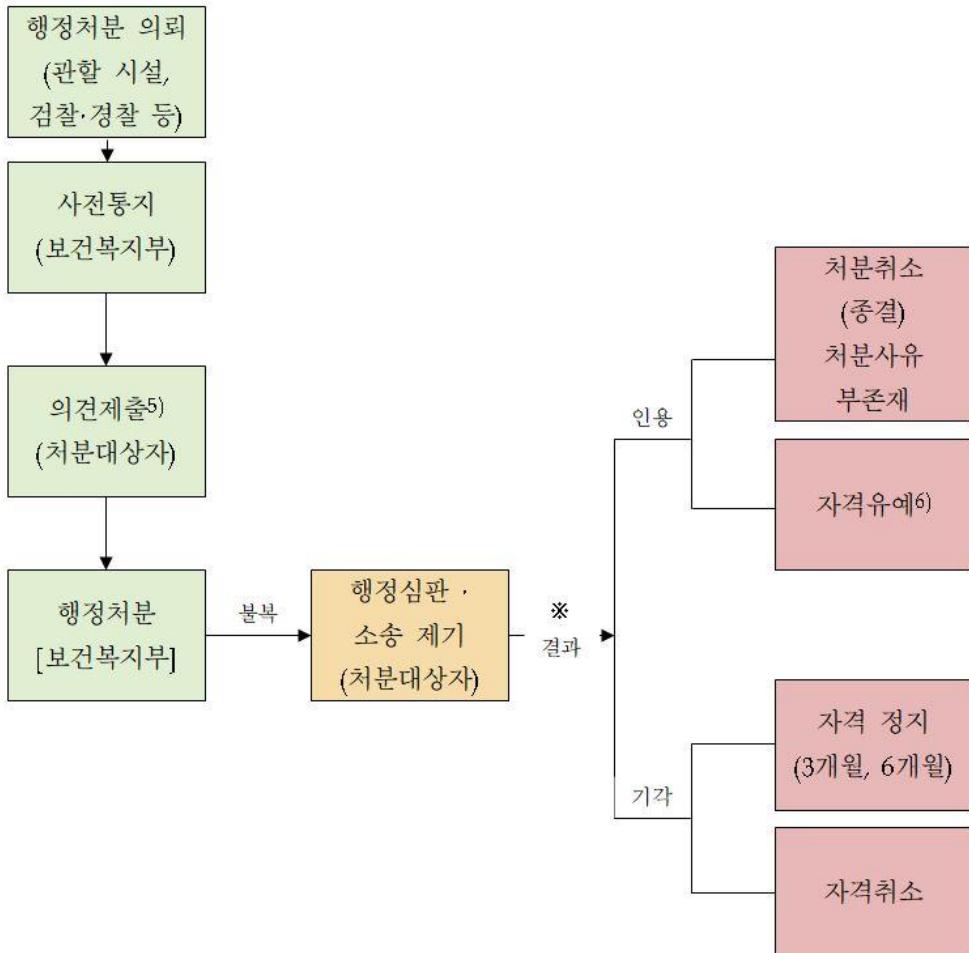
표 12. 법률적 판단

-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 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86.02.25. 선고 85누664판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명확한 경우는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위법을 시정할 권한이 있음.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경우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등은 필요.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법제화 뒤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규제 절차⁴⁾를 거치고 있다.

4) 행정처분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인 것이 원칙이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함. 다만,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요구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것이 명확한 경우는 자격증 발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도 처분청으로서 직권취소로 위법을 시정할 권한이 있음(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1두9547 사회복지사1급자격취소처분취소)

그림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 5)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처분 절차로서, 의견제출기한 내 처분대상자가 신청한 청문도 시행
- 6) 방법: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자격취득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취소(유예) 처분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수한 교육에 대한 증빙서류(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등)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유예기간은 통상 사회복지현장실습 12개월, 다른 교과목 6개월 수준으로 처분.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13. 연도별/ 등급별 자격증 취소 현황

(단위:건)

연도	1급	2급	3급	연도별 소계	
				누계	
2006	당해년도	-	-	-	-
	취소사유		-	-	-
2007	당해년도	-	2	-	2
	취소사유		학위취소 2건	-	-
2008	당해년도	-	-	-	-
	취소사유	-	-	-	-
2009	당해년도	2	6	-	8
	취소사유	학점취소 2건	학위취소 1건 학점취소 5건	-	-
2010	당해년도	-	1	-	1
	취소사유		학위취소 1건	-	-
2011	당해년도	-	29	-	29
	취소사유	-	학위취소 3건 학점취소 26건	-	-
2012	당해년도	3	79	-	82
	취소사유	허위실습 3건	학점취소 2건 허위실습 77건	-	-
2013	당해년도	-	17	-	17
	취소사유	-	학점취소 3건 허위실습 14건	-	-
2014	당해년도	-	15	-	15
	취소사유	-	허위실습 15건	-	-
2015	당해년도	-	1	-	1
	취소사유		학위취소 1건		

2016	당해년도	-	1	-	16
	취소사유	-	허위실습 1건	-	-
2017	당해년도	-	270	-	270
	취소사유	-	학점취소 270건	-	-
총계		학점취소 2건 허위실습 3건	학위최소 8건 학점취소 306건 허위실습 107건		426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내부자료

표 1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 연도별 총계 및 평균

유형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최근 12년	
													계	평균
총계	-	2	-	8	1	29	83	17	16	1	1	270	426	35.7
학위 취소	-	2	-	1	1	3	-	-	-	1	-	-	8	0.7
학점 취소	-	-	-	7	-	26	2	3	-	-	-	270	308	25.7
허위 실습	-	-	-	-	-	-	80	14	15	-	1	-	110	9.2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내부자료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관련 사례 분석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 기준의 사례로서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 취득 ②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의 해당 경우 ③ 자격증의 대여·양도·위조·변조 ④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접수사례	내 용
부정 현장실습 처리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기관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실습확인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B기관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행한 적이 없이 실습확인증을 부정 발급한 사례에 관해 조사 요청
자격증 발급 거부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소재 D대학에서 통신과정에 의한 학위 취득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실제 요구하는 교과목 및 시간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증교부 거부로 처분됨
자격증 발급 취소 및 회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소재 E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무인가 대학으로 확인되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회수 함
자격증 위·변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F시설의 경우 새로 입사한 직원의 자격증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입력오류가 발생, 자격증 위·변조 건으로 의심되어 수사에 의뢰 중에 있음
부당학점 수여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G대학의 경우 단축 수업, 수업 미실시 등의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 받은 학생들 중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격이 취소 됨
자격 취소 재유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미충족하여 자격취소유예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자격취소 재유예 처분 됨

1) 통신과정에 의한 외국 대학 학위취득 후 요청한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거부 사례

■ 사실관계

- A씨와 B씨는 각 해외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인터넷 통신 등 원격 교육의 방법과 1년에 한 번씩 1주일간 해당 국가로 출국해 수업을 받으며 각 사회사업학 학사, 박사학위를 수여 받음
- A씨와 B씨는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 학위를 취득한 자들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동등한 학력⁵⁾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를 신청함
- 피고는 A씨와 B씨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출국한 기간이 학위취득에 필요 한 '매 학년도 30주 이상'의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격미달 사유로 교부신청을 반려함
- 피고는 사건 처분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 일정기간 출국사실 없이 국내에서 통신과정에 의해 외국 대학 과정⁶⁾을 전공한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회신 받은 바 있음

■ 행정처분내용

- A씨와 B씨는 통신과정으로 외국 대학의 학위를 취득했으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시간을 실제로 이수하지 않아 자격증교부 거부로 처분 됨

■ 판례요지

-
- 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 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관련, 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6)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의미는 국외에 출국하여 당해 국가 내 인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석됨.

- 사회복지학 및 사회사업학은 응용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으로서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이 핵심적이나 통신교육의 방법으로는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과과정에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통신과정에 의해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회신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회신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최종결과

-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 거부로 처분 됨

2) 외국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위 취득 후 무인가 대학으로 판명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된 사례

■ 사실관계

- A는 1999년 미국 소재 C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위를 취득하였음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교부받았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C대학의 한국분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분교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대학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위 취득자에게 부여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회수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음

■ 행정처분 내용

- 피고는 원고가 학위를 취득한 미국 소재 C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무인가 대학이어서 그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

■ 판례요지

- 사회복지사협회가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한 경우, 사회복지사협회는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당연히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위법을 시정할 권한이 있음

■ 최종결과

- 자격취소로 처분 됨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변조 사례

■사실관계

- A씨는 사회복지법인 H 시설에 입사하면서 사회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증빙해야 할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자격증, 발행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 사본을 입사 시설에 제출하였음
- A씨를 채용한 시설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 피진정인을 전산등록하려고 시도하였음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그러나 H 시설은 A씨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 전산 등록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에 전산 오류가 아닌지 등을 알아보는 전화 문의를 하였음
- 협회는 A씨가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사유를 찾기 위해 전화 문의를 한 시설로부터 A씨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을 팩스로 접수 받았음
- 접수받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을 토대로 조회한 결과, A씨의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상호 일치하는 사회복지사는 존재하지 않았음 (해당 자격번호는 존재하나 성명과 주민번호는 다른 사람임) 즉, A씨가 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한 이력이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한 이력이 없었음
- 협회는 국가자격증 위·변조 사례로 의심돼 A씨를 채용한 시설에 연락하여 자격조회를 공식적으로 의뢰받고자 문의하였고, 업무 위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국가자격 위·변조(자격기본법 제14조제2항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음

■행정처분 및 최종결과

- 공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으로 검찰기소되었음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재유예

■ 사실관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검수 과정에서 A씨가 법령이 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을 확인함
- 이후 A씨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자격취소유예기한 내에 증빙서류(교과목 이수 내역) 미제출함

■ 행정처분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따른 필수 1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이수가 필요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재유예함

■ 최종결과

- 교과목 미이수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소 재유예하나 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됨

5) 대학에서의 단축 수업, 수업 미실시 등으로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 받은 사례

■ 사실관계

- 감사원 감사결과, B 대학은 일정 기간 중 단축 수업, 수업 미실시 등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대상기간 동안의 수많은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 함
- 교육부는 B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당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함
- 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교과목을 부당하게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토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통보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졸업생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공지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함
- 이후 취소 철회자의 심사·판정 등을 진행함

■ 행정처분 내용

- B 대학 졸업자 자격 취소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유예 기간 이후부터 자격 취소 대상자 중 교과목 미이수자에 대하여 자격 취소를 사전 통지함

■ 최종결과

- 감사지적 졸업생 중 자격 취소(유예)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 중 절반 이상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이 유지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일부 3차 유예 중에 있음

6) 사회복지사자격증 실습시간 미달 및 현장실습확인서 허위제출에 의한 자격 유예 사례

■ 사실관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A씨 외 13인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실습을 했다는 민원사항을 확인함
- A씨 외 13인은 K 소재의 모대학교 노인보건복지과 재학 중 D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완료했다고 확인서를 제출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바 있음

■ 행정처분내용

- A씨 외 13인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에 필요한 12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고 확인서 제출 후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실제로 실습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자격유예 처분 됨

■ 최종결과

- 현장실습 미이수로 12개월 자격유예 처리 됨

7) 현장실습 미이수에 대한 부정사례 신고

■사실관계

- J구 소재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해당 시설에서 현장실습을 이행한 적이 없으나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사례를 목격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고하였음
- 협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청했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형사수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일 경우 적정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 이후 해당 건에 대한 형사수사가 진행되었음

■최종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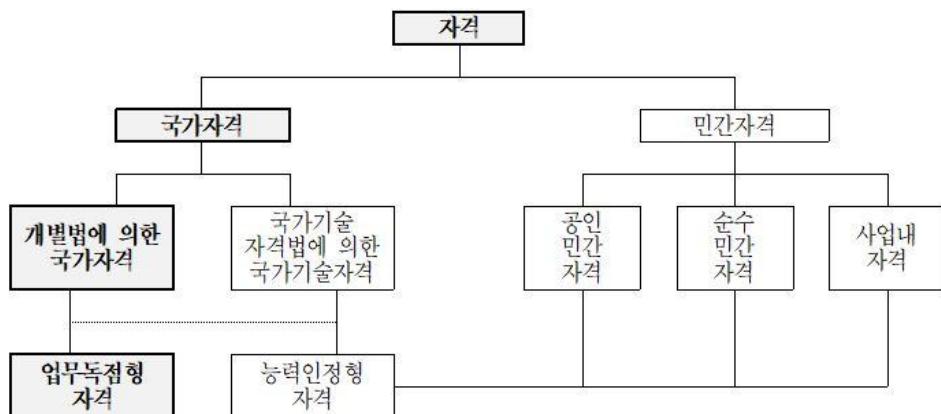
- 해당관서의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 실습으로 판명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유예 처리됨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문제점

1) 법률로 정한 규제조차 확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

국가자격제도는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변호사, 의사 등 개별법에 의한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통상 해당 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면허형 자격이다. 사회복지사도 국가전문자격에 속하는데 면허형 자격과 달리 의무고용형 자격으로 구분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재 국가전문자격이 66개 법령에 128개 종목, 국가기술자격은 586개 종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 3. 대한민국 자격제도 현황⁷⁾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전문국가자격이다. 의무고용형 자격으로서 2005년부터는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결격사유 법률 시행일 2005.08.14., 이전까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 이어 2007년에는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제외했으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2017년에는 정신질환자도 결격사유에 추가한 상태다(시행일 2018.04.25.).

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부자료

표 16. 현행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4.25.]	

문제는 이 결격사유를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 조회를 개별 요청해야 하는 등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망(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사용이 제한적이고, 있다 해도 상시 조회를 통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해 자격 8만여 건이 신규 등록되고, 이미 등록된 자격도 93만여 건이 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된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개인정보 변경 등을 신고하는 제도가 강제되지 않는 한 결격사유를 완벽히 조회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아울러, 2017년 개정돼 2018년 시행예정인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역시 의사 진단서를 사회복지사 개인으로부터 직접 접수 받아야 하는 등 확인이 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은데다 결격사유 자체에 대한 일부 논란도 있다.

살펴본 결격사유는 법률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전과 진입 후 모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즉, 상시 확인 및 규제 적용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를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완비되지 않았다.

2) 진입(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심의 시 확인이 어려운 사항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한적 요건으로 두는 등 학력수준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사회복지사 1급 역시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학력수준을 포함한다. 또 다른 기본요건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인데, 이 역시 교육기관, 즉 교육부 소관으로서 심의 시 학력 또는 학점 취소 요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변형된 형태의 전공이나 학과 명칭 또는 교과목 명칭에 대한 심의 요구에 건건이 대응해야 하는데다, 차후 학력 또는 학점 취소 사실이 확인됐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의 당연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수교과목 요건 중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처럼 보건복지부가 별도 설정한 기준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사회복지사2급 자격 요건이 전공제에서 교과목이수제로 변경되던 시기부터 부실·부정 실습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경찰수사결과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08년 보건복지부가 법령 개정 및 고시를 통해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별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관련법령 시행일 2010.01.01.). 문제는 자격심사 시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학력이나 학점은 이미 인정받은 요건에 대한 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확인함으로써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⁸⁾, 실습 기준은 단순심사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습지도자의 상근 여부 등이 완벽한 심사가 불가능한 대표사례다⁹⁾. 입법 계기로 볼 때도 단순심사가 아닌 심의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

8) 시간제나 학점은행제 이수자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자리 잡고 있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간제 등록을 한 사람이 그곳에서 일정한 과목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령에 의한 학점이나 학력이 인정되지는 않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7두2500 판결)

9)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1999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시행하며 크고 작은 다툼으로 여러 판례가 있는 상태다. 최근에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처분한 자격 불합격 사례 중 ‘실

점이다.

심의는 심사와 달리 제도도입 취지 등 역사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격보류 또는 자격불합격 시 이해당사자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심의에 최선을 다할수록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민원에 봉착하기도 한다. 결국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2015년 회답해석례¹⁰⁾, 실습기관 기준과 관련됨),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범위'(2014년 회답해석례¹¹⁾, 실습지도자 기준과 관련됨) 등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주요요건인 실습기준에 대한 해석요청에 기인하고 있다.

외국대학 관련 심의 역시 확인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본래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비교)는 요건에 따라 외국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자격 발급 심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학력만 인정받으려는 비전공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대학 학력은 접수 시 구비할 서류가 많고, 이로 인한 비용 및 시간이 추가 되기 때문에 다툼 소지가 많다. 구비서류 중 '최종학력증명서'를 외국대학 학력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 서류를 우리나라 국가자격 발급 심의 서류로 접수하는 것이어서, 각 서류마다 번역 확인,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다른 전문직군과의 다툼도 발생하고, 외국대학 학력심의서류를 어렵게 구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일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외국대학 학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실정¹²⁾이다. 특히, 나라별로 서로 다른 학력 수준을 가늠할

습지도자 상근 여부'를 두고 다투는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 10) 안건번호 15-0247, 회신일자 2015.06.23.,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 됨, 이유(요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 11) 관련문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807(2014.11.18.), 회답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 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 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

수 있는 잣대가 없어 졸업 및 성적 증빙 이외에도 각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정확인 서류'를 추가로 접수받아 심의해야 하는데, 단순히 서류종류가 올바르다 하여 학력도 올바른 지까지 심사자가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진입(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심의 시 확인이 어렵더라도 검수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견되면 발급행정청으로서 당연 취소(자격 취소 통보 뒤 7일 내 자격증 반납 또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왔으며, 벽성대 사건¹³⁾ 이후로는 유예 절차를 확대함으로써 자격 취소로 인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2016년 자격 정지 및 취소 기준이 법제화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강화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소권한에도 불구하고 자격 발급 기준(이수교과목 또는 실습기준 등) 미충족 사실 발견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직접 취소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¹⁴⁾.

3) 자격 정지 및 취소 효력의 한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 단체로서 사회복지사로 진입한 이들(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이자 전문자격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단체로서 위상을 갖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
- 1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련 학력을 소정의 서류로 심의할 뿐, 외국대학 학력 자체를 인정하는 행정청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 학력은 고졸 까지이며,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은 이미 인정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서류('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으로 안내)를 접수받아 확인하고 있다.
- 13) 2011년 감사원이 벽성대 학생 1,424명에 대한 부당 학점 부여를 확인 처분하면서 불거진 사건. 연이어 교육부가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시행하고, 보건복지부가 해당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 토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통보하면서 6년 여 간 수 차례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처분 유예 절차가 진행됐으며, 학생들과의 법정다툼, 학교폐쇄조치, 자격취소 공시송달 등 행정력이 동원됐다. 2017년 11월 현재 관련자 270명이 자격 취소된 상태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규제(정지 또는 취소) 권한을 위탁한 법문은 없다. 그러나 규제(정지 또는 취소) 조항이 법문화돼 있지 않을 때부터 이미 취소행정을 처리해 온 상태이며, 규제(정지 또는 취소) 조항이 법문화된 현재까지도 발급 기준 미충족(이수교과목 또는 실습기준 미충족 등)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 취소 절차를 직접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사회복지전문가단체의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전문자격 특성상 이런 자정 노력에 한계도 있다. 변호사, 의사 등 해당 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면허형 자격의 경우, 해당 전문가단체의 회원 자격을 잃으면 해당 면허를 활용한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기 마련이지만, 사회복지사처럼 의무고용형 자격은 전문가단체의 회원 자격이 아닌 시장(채용권한이 있는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에 의해 경제활동을 통제받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한다 해도 자정 노력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다. 이를테면, 회원을 탈퇴하거나 미가입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활용하는 데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회원들이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며, 회원 제명을 한다 해도 사회복지사로서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미가 적은 실정이다.

규제(정지 및 취소) 해소 문제도 짚어볼만하다. 법조문은 규제(정지 및 취소) 받은자의 복권 절차 등 출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3항, 시행일: 2018.04.25.)고 명시할 뿐, 2년이 지나면 과거 발급 시 제출했던 구비서류(학력 및 이수교과목 요건 등) 그대로 입증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법령이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다시 갖추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초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온도차는 있겠으나 소정의 재이수 교과목 확인 및 재진입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등 규제 해소 절차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률에 위임 규정도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취소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2호 라목)처럼 사법적 판단 이외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해 명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를 할 수도 없다. 꼭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명확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규제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적기 대응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의 아동 학대 행위가 확인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 등의 사

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분석

1. 영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1) 영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은 사람이나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이나 어른을 위해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이들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지역사회, 가정,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아동이나 가족, 취약한 성인을 지원하는데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Prospects, 2016). 이러한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공무원으로서 지방정부에 법적으로 부여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보호의 의무를 수행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핵심적인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간에서는 약물 남용, 주거취약층, 정신보건 문제 등을 다룬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 또는 성인서비스에 전문화 되어 있다 (BASW, 2016).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에 의해 아동서비스국장(Children's Services Director) 배치가 의무화되어 사회서비스는 아동서비스와 성인서비스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아동서비스는 교육과 연계되며, 성인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된다. 아동서비스국장은 아동부서를 책임지며 성인서비스 국장(Director of Adults' Services)은 성인서비스부서를 담당하는 것이다. 아동서비스에서 일할 경우 요보호 아동 지원, 요보호 아동에서 독립하는 아동 지원, 촉법 청소년 지원, 가족해체 방지, 학교 회피나 장기결석 아동의 가족 지원, 입양이나 위탁과정 관리, 아동보호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과 가족을 실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성인서비스에서 일할 경우 정신보건문제를 가진 사람의 독립적 삶 지원, 학습장애 성인의 자립적 삶 지원, 범죄를 저지른 성인 지원, 에이즈 또는 HIV 감염자 지원, 신체, 감각 장애인 자립 촉진, 약물 문제 성인 지원, 노인의 가능한 자립적 삶을 지원, 시설보호 이전 지원 등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전일제 기준 3년의 학부과정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200일 이상(일 근무시간 6~7시간) 수퍼비전이 제공되는 실습을 하여야 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의 역할, 관련 법규정, 이론, 연구, 윤리, 가치 등

을 배우지만 약 절반의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실천이나 관련된 환경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원의 경우 전일제 기준 2년 과정인데 보통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시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일정한 교육 및 훈련 기준(standards of education and training)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입학(programme admissions), 과정 운영 및 자원(programme management and resources), 교육과정 (curriculum), 실습(practice placements), 평가(assess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HCPC, 2014a, 2014b). 각각의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7. 영국 사회복지사 양성 기관 교육 및 훈련 기준

기준 영역	기준 내용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와 교육제공자 모두 정보가 충분한 선택(informed choice)를 할 수 있을 것 우수한 언어능력에 대한 증거, 범죄조회, 건강기준, 적합한 학술 및 전문 기준, 선 행 학습 및 경력 인증 등을 포함한 선발기준을 적용할 것 평등과 다양성 정책에 대한 시행과 감독 계획을 가지고 적용할 것
과정운영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공간, 효과적 운영, 정기적인 모니터와 평가 시스템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과정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가지는 사람 지명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의 적정 수 배치, 해당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사람의 교육, 지속적인 전문성과 연구 개발을 위한 교육자 개발 프로그램 보유 학생 학습 지원 자원의 효과적 사용 필수 학습과 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적 지원 IT 시설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원 보유와 학생 및 교육자가 이용가능 학생의 복지와 복지를 위한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설비 보유 학술 및 지방(pastoral) 학생 지원 시스템 보유 학생 이의제기 청구 보유 실습과 임상 교육에 참여시 적합한 학생들의 동의절차 적용 필수 출석과정을 규정하고 모니터 기제를 적용 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우려를 다룰 수 있는 절차를 프로그램 전반에 적용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돌봄자) 과정 참여(선발, 과정 계획, 교육 활동, 평가, 질 보장 등)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목표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등록에 필요한 숙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될 것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된 교육과정 지침에 명시된 철학, 핵심 가치, 기술, 지식 기반을 반영할 것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 교육과정의 중심을 이를 것 교육과정은 현재 실천과 관련성을 유지할 것 교육과정을 통해 HCPC의 행동, 수행, 윤리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증거 기반 실천을 촉진할 것 • 효과적인 교육과정 전달에 적합한 학습과 교육 접근법이 사용될 것 • 전문분야 간 교육이 있을때는 각 전문집단의 특정 전문 기술 및 지식이 적합하게 다루어 질 것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이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제공될 것 • 교육과정 전달과 학습 목적 달성을 적합한 실습의 횟수, 기간, 범위가 보장 될 것 • 실습에서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이 제공될 것 • 교육 공급자는 실습을 승인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것 • 실습제공자는 시행 및 모니터 계획을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평등과 다양성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 • 실습에 적정한 수의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이 배치될 것 • 실습 교육자는 관련된 지식과 기술, 경력을 가지고, 적합한 실습 교육자 훈련을 받고, 적합하게 등록되어 있을 것 • 교육 제공공자와 실습 제공자가 간의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이 있을 것 • 학생과 실습 제공자와 실습 교육자 모두 학습 목적의 성취, 실습 경험에 의 시간, 기간 및 관련된 기록의 유지 • 기대수준과 전문적 행위, 낙제를 포함한 평가 과정, 의사소통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온전히 준비되어 있을 것 • 학습, 교육, 수퍼비전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 자립적 학습과 전문적 행위를 촉진시킬 것 • 학습과 교육 수단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욕구를 반영해야하며 동료들도 실습의 전과정에 함께 할 것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전략과 설계는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등록시 요구되는 숙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 • 모든 평가는 외부 참고 기준에 대해서 측정될 수 있는 엄격하고 교과적인 과정을 제공해야 함 • 실천의 전문적 측면이 교육과 실습의 과정에서의 평가에 통합되어 있어야 함 • 평가 수단은 학습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수행에 대한 측정은 객관적이고 실천에 적합하여야 함 • 평가의 적합한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와 감독기제가 있어야 함 • 평가 규정은 학생의 발전과 성취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함 • 평가 규정이나 기타 관련 정책은 승인된 프로그램이 HCPC에서 보증된 자격이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평가 규정은 등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비평가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함 • 평가 규정은 학생의 이의제기의 권리를 위한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함 • 평가 규정은 최소 한명 이상의,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외부 심사관 선임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함.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는 보건의료 및 돌봄 전문직 위원회(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 이하 전문직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2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전문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을 수행해야 한다(BASW, 2016). 지속전문개발이란 ‘전문가가 자신의 직업에서 자신의 실천 영역에 있어 안전하고, 교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프로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기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의 핵심 기관은 전문직 위원회라 할 수 있다(HCPC, 2017). 전문직 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전문직을 규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중을 보호한다(protect the public)는 것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예술 치료사(Arts therapist), 생의학자, 발전문의(podiatrist), 임상과학자, 영양사, 보청기 보급사(hearing aid dispenser), 작업치료사, 수술관리사(operating department practitioner), 시각교정사(orthoptist),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보철사(orthotists), 방사선사, 언어치료사 등의 전문직을 규제하고 있다.

전문직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되며 6인은 규제대상 전문직 중에서 선임되고, 6인은 그 외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로 왕실 자문단인 추밀원(Privy Council)에 의해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법정 위원회로서 교육 및 훈련 위원회(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 수행 및 역량 위원회(Conduct and Competence Committee), 건강 위원회(Health Committee), 조사 위원회(Investigating Committee)를 설치하고 있다. 이 중 건강 위원회와 조사 위원회는 등록 전문직, 일반인, 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직 위원회 파트너(HCPC Partner) 중에서 선임된다.

3)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징계 절차¹⁵⁾

등록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주민, 고용주, 경찰, 다른 보건의료 및 돌봄 전

15)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 및 돌봄 전문직 위원회 웹사이트 참조(<http://www.hpc-uk.org>)

문가 등 누구나 전문직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rasing a concern)를 할 수 있다 (HCPC, 2017). 민원 제기는 반드시 기명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민의 경우 신변을 보호하고,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이내의 사안에 대해 다루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제재는 실천 적합성(fitness to practise)에 위배되는 경우 이루어지는데 이는 직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및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등록 자격에 대한 제재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 18>과 같은 유형의 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해당될 경우 공개된 양식에 따라 전문직 위원회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양식에는 민원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 민원을 제기하는 대상자의 이름과 직업, 직장 등에 관한 정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해당되는 사건의 내용, 일어난 장소와 시간 등),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에 대한 정보, 민원 제기자가 취한 행동에 대한 정보, 기타 입증 서류(사건 당시 메모, 관련 통신 내용 등)가 포함되어 있다. 민원 제기자의 정보는 민원 제기 대상자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표 18. 사회복지사 민원 제기 문제의 유형

문제의 유형	해당하는 경우
부당 행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 부족	반복적이거나 일정기간 동안 지식, 기술 및 판단력의 부족이 나타난 경우
유죄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건강 문제	장기적이거나 치료가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 결정	보건의료나 사회적 돌봄과 관련된 다른 규제기관의 결정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안을 다루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가 지정되며 이 사례관리자는 누구의 편에 서지 않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원 제기 당사자에게 과정을 통지하고 설명해준다. 민원제기 대상자의 전문직 이외 사람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 패널(investigating committee panel)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 법무사

(solicitor)가 청문(hearing)을 준비하여 수행 및 역량 위원회(Conduct and Competence Committee)나 건강 위원회(Health Committee)의 패널 등에 의한 청문을 진행한다. 어떠한 패널이 사례를 담당하는가는 민원제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표 19>. 이 청문은 전문직 위원회 산하의 보건의료 및 돌봄 전문가 재판소(Health & Care Professions Tribunal Services, HCPTS)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 패널에 의해 등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고, 실천 수행 조건 부여, 등록 유예, 등록 취소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표 19. 사례 유형에 따른 담당 패널

패널 종류	사례 유형
수행 및 역량 위원회 패널(Conduct and Competence Committee Panel)	위법 행위, 유능력 결여, 유죄 판결 또는 주의 사항, 다른 규제 당국의 결정
건강 위원회 패널(Health Committee Panel)	전문가의 건강이 자신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다른 조사 위원회 패널(investigating committee panel)	등록 기재 사항에 사기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패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명령(interim order)을 내려 민원제기 대상자의 업무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민원제기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위험이 초래할 수 있거나 다른 공익 상 이유가 있을 때 임시 정직을 명령하거나 최종 결정 때까지 업무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패널은 최대 18개월 동안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청문에서 민원제기 대상자는 소명을 할 수 있고 임시 명령에 대해서 고등 법원 등에 항소 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 명령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 성적인 범죄행위
-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도난행위
- 심각한 과실행위

징계에 대해서 등록 사회복지사는 법정(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으며 전문가 기준 기구(Professional Standards Authority)에서도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원제기 대상자는 노조나 전문가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제기 대상자의 대응은 패널이 실천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전문직 위원회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면 7개월 이내에 최종 청문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부정직, 사기 또는 신뢰 오용
- 취약 계층착취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무시
- 서비스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문제
- 실수 은폐 및 수사 방해
- 서비스 사용자와 부적절한 관계
- 무모하거나 고의적으로 유해한 행위
- 심각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기준 미달
- 성추행이나 성희롱(아동 음란물에 관여한 경우 포함)에 관여
- 약물 남용이나 오용
-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
-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활동수행

4) 조사 및 징계 사례

전문직 위원회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분된 유형별 대표적 사례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HCPC, 2017). 그 중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리부서 담당자의 음주운전 사고 사례

관리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담당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

전문직 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담당자는 이 사고로 체포된 지 5일 만에 전문직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수행 및 역량 위원회의 패널은 법원과 경찰이 제공 한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증 된 주장 및 사실(유죄 판결)을 확인하고 청문을 진행하였다. 담당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음주운전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매우 힘든 교훈을 얻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을 소명하였다.

패널은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부정적 측면은 이 담당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 담당자도 이러한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행동을 하였으며, 실제 다른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은 이 담당자가 현장에서 남아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으며 전문직 위원회에서도 자진 신고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이행하고,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충분히 진술하고 어떻게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조사와 청문 절차에 정직한 자세로 임하였다는 점 등이 있었다.

패널은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담당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고, 본인의 책임을 이행하고 통감하고 있으며,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천 적합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사회복지사의 기밀 누설 사례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공개하여 전문직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실천과 역량 위원회 패널은 사회복지사 종사 기관의 관리자와 서비스 이용자 가족 구성원 등의 중인 진술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고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 적합성 손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게시된 내용이 이용자에 대하여 무례하고 잘못된 판단을 포함하고 있었고, 패널은 대중들이 이를 접할 때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도 이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다.

패널은 사회복지사의 잘못된 행동이 시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지만 사회복지사가 진술과정에서 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해당 내용이 다른 가족 일 수도 있어서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완전

히 잘못을 인지하고 시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매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 특성 상 전문가는 자신이 게시하는 내용이 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기밀 누설의 가능성 있는 점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패널은 12개월간의 조건부 실천 명령을 결정하였다. 1년 이내에 패널은 고용주로부터 기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사회복지사가 명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였고, 과거의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한적 조건은 철회되었고,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2. 미국(뉴욕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1) 미국(뉴욕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이 개인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행동, 감정, 태도, 관계,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돋는 전문직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장단기 정신적, 감정적, 행동적, 환경적 조건을 다루며 이에 따라 정신 질환과 감정적 불안정, 정신적인 가족의 어려움, 급성 및 만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의 조정,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과 학습 장애, 지역사회 문제와 사회적 쟁점 등이 사회복지사의 실천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같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일종의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¹⁶⁾ 즉 보건의료 분야는 크게 신체 건강과 행동 건강(behavioral health)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신보건이나 약물 남용 등의 문제가 해당하는 행동 건강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이 바로 사회복지사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사는 기업, 학교, 요양시설, 정부기관, 정신보건센터, 가족 서비스 기관, 사회 기관 등에서 활동 하지만 주된 활동 기반은 병원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 사회복지사의 특징은 자격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뉴욕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숙련 사회복지사(Licensed Master Social Worker, 이하 LMSW)와 임상 사회복지사(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이하 LCSW) 두 가지가 있고, 의료보험청구가 가능한 청구(reimbursement) 임상 사회복지사(이하 LCSW-R) 자격은 별도로 있다. 임상 사회복지사는 정신적, 정서적, 행동, 발달, 중독성 질환의 진단, 치료 계획의 개발 및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임상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숙련 사회복지사는 임상심리사나 정신과 의사 등의 감독 하에 이러한 임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기본적 사회복지사 자격조건은 인준된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900시간 실습을 끝나면 LMSW 신청할 수 있으면 모든 서류가 통과되면 사회복지사협회 위원회

16) 손해인 사회복지수퍼바이저(Creedmoor Psychiatric Center, NY) 자문 내용임.

(Association of Social Work Boards)에서 시험신청을 하고 컴퓨터 기반 시험 (computer based test)에서 75점 이상을 맞게 되면 합격하지만 그리고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 갱신을 위해서는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수교육기관에서 36시간 (1달에 1시간)의 보수교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숙련 사회복지사의 일반 요건과 교육 요건 등을 <표 20>과 같다.

표 20. 미국 숙련 사회복지사(LMSW) 자격 요건

요건	요건 내용
일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도덕적 소양 • 최소 만 21세 이상 • 교육 요건 충족 • 시험 요건 충족 • 뉴욕주 공인 공급자에 의한 아동 학대 식별 및 신고 교육이나 훈련 이수
교육 요건	<p>사회복지실천 교육 위원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 인증이나 교육부 인기를 받은 사회복지사 석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 다양성, 사회정의, 위기 인구집단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 기초 및 고급 사회복지실천기술 • 사회복지 실천 평가와 연구 • 900시간 이상 현장 실습

LCSW나 LCSW-R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에서 규정된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수퍼바이저 아래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접촉(client contact)을 2,000시간 이상하고, 100시간 이상 수퍼비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퍼바이저는 LCSW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임상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나 임상의사 (Licensed Physician)이면서 주정부에 수퍼바이저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격 요건은 <표 21>과 같다. LCSW-R은 LCSW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임상현장에서 2,400시간 클라이언트를 접촉하고 매달 2시간 시간 수퍼비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표 21. 미국 임상 사회복지사(LCSW) 자격 요건

요건	요건 내용
일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도덕적 소양 최소 만 21세 이상 교육부 조건을 충족하는 12학기 이상 임상 과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실천 석사 교육과정 이수 진단, 심리치료(psychotherapy), 실사 기반 치료 계획(assessment-based treatment planning)의 분야에서 3년 이상 수퍼바이저 지도 하의 경력 임상 시험 요건 충족 뉴욕주 공급자에 의한 아동 학대 식별 및 신고 교육이나 훈련 이수
교육 요건	<p>사회복지실천 교육 위원회(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 인증이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 석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로 최소 60학점 이상 전일제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다양성, 사회정의, 위기 인구집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기초 및 고급 사회복지실천기술 사회복지 실천 평가와 연구 900시간 이상 현장 실습 12학점 이상의 임상 교육과정(환경 속의 인간 강조, 임상 사회복지실천의 진단과 사정, 임상 사회복지 치료, 일반 및 특수 인구집단 대상 임상 사회복지실천 포함)
경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실천 석사 학위 취득 이후 6년 이내의 진단, 임상 심리, 사정 기반 치료 계획 분야에서 수퍼바이저 지도 하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속적으로 36 개월(3년)간 2,000 시간 이상 클라이언트 접촉 경력 현장 경력은 임상 심리와 임상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수퍼바이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주의 LCSW 자격이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사나 의사

2)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기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의 핵심적 기관은 뉴욕 주정부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산하 전문직 사무소(Office of Profession, 이하 전문직 사무소)로, 이 사무소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침술, 응용 행동 분석, 건축, 척추교정, 치과, 식이요법, 인테리어, 지질조사, 마사지 치료, 의사, 정신보건, 간호, 작업 치료, 검안, 의약, 물리치료, 회계 등 각종 보건의료 전문 자격부터 기술직까지 다

양한 전문자격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법에 규정된 50개 이상의 전문직의 자격증을 관리한다(OP, 2017).

이 전문직 사무소는 교육위원회(Board of Regents)의 지휘를 받는데 교육위원회는 주 의회에서 선출된 5년 임기의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주 대표로 4명, 그리고 13개 구역(judicial district)별로 1명씩 선출된다(Board of Regents, 2017).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만 지원을 받는다. 전문직 사무소는 교육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주 교육부가 운영하며 29개의 규제 전문직별 주위원회(State Board)의 지원을 받는다. 전문직별 주위원회는 교육 행정장관(Commissioner of Education)의 추천을 받아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여 구성한다.

전문직 사무소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자격시험을 설계하고 관리하며,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자격증명을 발행하고, 해외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등 면허 및 등록 업무, 전문직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신고를 받으며 약물 문제가 있는 전문직을 지원하는 전문직 징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직업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고, 최신 정보를 전문직들에게 제공하고, 전문직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전문직 사무소의 업무이다.

3)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고 및 징계 절차¹⁷⁾

전문직 사무소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관할하는 모든 전문직의 부정 행위를 규제한다. 전문직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업무 수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한 번에의 심각한 무능력 또는 중과실의 행위에 관여하거나 두 번 이상 과실 또는 무능력을 행사하는 행위
- 면허없는 사람이 면허가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돋는 행위
-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고객 또는 환자 서비스 거부
- 직업 범위를 벗어난 업무
- 허가없이 기밀 정보 공개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17) 자세한 내용은 전문직 사무소 웹사이트 참조(<http://www.op.nysed.gov>)

- 요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성적 또는 육체적 학대
-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버리거나 무시한 경우
- 불필요한 업무 수행 또는 허가받지 않은 서비스 수행
-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취하고 업무를 행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양식에 따라 전문직 징계 사무소(Office of Professional Discipline)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최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지역 사무소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배정된다. 사무소는 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신고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증인의 진술이 있으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 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주위원회(State Board)과 협의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사는 대부분 9개월 이내에 완료 되고 많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종결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경미한 부정의 경우에는 전문직 사무소에서 서면권고(advisory letters), 행정경고(administrative warning)를 발행하며 이는 공개되지는 않는다. 더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는 별금에서 자격 취소(revocation)가 가능하며 이러한 제재의 경우에는 주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전문직 사무소를 감독하는 교육위원회(Board of Regents)에서 최종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자격 정지를 받은 경우 자격 회복을 신청하기까지 최소한 3년 이상 지나야 하며 역시 이사회가 전문 자격 회복 권한을 가진다. 이럴 경우 자격취소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주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격 정지가 아닌 경우에도 전문직 사무소는 정기 고용주 보고서나 재교육 프로그램 등 조건충족(probationary terms)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가령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전문직 보조 프로그램(Professional Assistance Program)에 참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완료할 경우 징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 징계 사례

전문직 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직들의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홈페이지에 징계 내용과 사유에 대한 요약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전문직의 이름과 징계 날짜를 기준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 중 2017년 최근 까지 사회복지사에 대해 공개된 징계 내용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2017년 미국 뉴욕주 사회복지사 징계 사례

징계 날짜	징계 내용	사유 요약
1월 10일	12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정지 유예, 2년간의 관찰(probation), 6개월 이내 \$500 벌금 지불	자격 범위 위반, 아동 복지를 위태롭게 한 혐의 인정
1월 10일	치료 과정 완료와 실천 적합시까지 12개월 이상의 무기한 자격 정지, 실천복귀 후 2년간의 관찰	부정확한 치료 날짜가 기입된 조기 개입 서비스 환자의 방문 기록을 제출 인정
3월 13일	1년간 서비스 정지 후 1년간 자격 정지, 2년간 관찰	환자에게 알코올 제공 혐의 인정
3월 13일	자격 포기 신청 인정	자격 범위 위반, 돌봄과 치료 태만
4월 4일	1개월 자격 정지, 23개월 자격 정지 유예, 24개월 관찰	이민 절차를 포함한 제3자의 요구에 의해 치료 과정에서 습득한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를 준비
5월 9일	1년간 자격 정지 유예, 1년간 관찰, \$500 벌금	환자의 평가와 치료에 대한 정확한 환자의 기록 유지 실패
5월 9일	1개월 자격 정지, 23개월 자격 정지 유예, 2년간 관찰	자격 범위 위반
6월 13일	1개월 자격 정지, 23개월 자격 정지 유예, 2년간 관찰	아동 동승 음주 난폭 운전 유죄 판결(E급 중범죄)
9월 12일	2년간 자격 정지, 최종 12개월간 자격 정지 유예, 실천복귀 후 2년간 관찰	보건의료 급여 프로그램에서 3건의 경미한 횡령 유죄 판결
9월 12일	1개월 자격 정지, 23개월 자격 정지 유예, 실천복귀 후 2년간 관찰	사업 기록 조직 혐의 인정

9월 12일	1개월 자격 정지, 23개월 자격 정지 유예, 2년간 관찰, \$1,000 벌금	전문직 퇴직시 환자 치료 기록 삭제 혐의 소명 실패
9월 12일	2년 자격 정지 유예, 2년간 관찰, \$500 벌금	환자에 대한 적절한 사정과 치료계획 수립, 정확한 기록 유지 실패 혐의 인정
9월 12일	자격 포기 인정	공식적인 비행과 경범죄 혐의 인정
10월 17일	실천 적합시까지 무제한 자격 정지, 실천복귀 후 2년간 관찰, 6개월 이내 \$500 벌금 납부	음주 운전 및 허위 보고 혐의 인정

3. 일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자격규제 제도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일본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의 복지에 관한 상담 등 조언 지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의사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의 연락 및 조정 기타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厚生勞働省, 2014). 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사회복지사는 장애나 노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1차적인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된다(金圓景ほ 2017).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3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복지계 대학 등 경로로 복지계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정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단기 양성 시설 경로로 복지계 대학에서 사회복지 기초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이후 단기 양성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일반 양성 시설 경로로 일반 대학을 졸업한 이후 4년 이상 상담 지원 업무 등에 종사한 이후 1년 이상 일반 양성 시설에서 수학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시험은 연간 1회 18과목으로 총 150문항이 출제된다. 일본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한 개요는 <표 23>과 같다.

표 23. 일본 사회복지사 국가 시험 개요

구분	내용
시작시기	1989 년부터 제 1 회 사회 복지사 시험 실시
실시시기 · 빈도	매년 1 월 중 1회
	18 과목, 총 150 문항 ① 인체의 구조와 기능 및 질병 ② 심리학 이론과 심리적 지원 ③ 사회 이론과 사회 체계 ④ 현대 사회와 복지

문제수 및 시험과목	⑤ 지역 복지의 이론과 방법 ⑥ 복지 재무 행정 및 복지 계획 ⑦ 사회 보장 ⑧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생활 보호 제도 ⑩ 보건 의료 서비스 ⑪ 권리 옹호와 성년 후견 제도 ⑫ 사회 조사의 기초 ⑬ 상담 지원 재단과 직업 ⑭ 상담 원조의 이론과 방법 ⑮ 복지 서비스의 조직과 경영 ⑯ 고령자에 대한 지원과 개호 보험 제도 ⑰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동 가정 복지 제도 ⑱ 취업 지원 서비스 간생 보호 제도
자격 기준	총 점수의 60 %
합격률	2016년 26.2% 2015년 27.0% 2014년 27.5% 2013년 18.8%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 이외에 인정 사회복지사와 인정 상급 사회복지사 제도를 가지고 있다(厚生勞働省, 2014). 인정 사회복지사는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사회복지사의 능력 개발과 경력을 지원하고 습득한 실천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 인정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직능 단체의 정회원이고, 상담 원조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실무 경험 목표 실적을 달성하고, 인증된 교육 수강 연수를 20학점 이상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인정 사회복지사 인증·인정기구’의 심사를 거쳐 일본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 사회복지사는 상담 원조 부문의 리더로서 노인 복지,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 방법이나 제도에 정통한 다른 직종과 연계하여 복잡한 일상생활 욕구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담 원조를 실천할 것이 기대된다. 즉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면서 직장 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습지도를 수행하며 지역이나 외부 기관과의 창구로서 긴급한 대응과 불만에 대응하며, 타 직종과 협력하고 직장 내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정 상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직능 단체 정회원이면서 공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에 상담 원조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정해진 실무 경험 목표 실적을 달성하고, 20학점 이상의 인증 교육 수강 연수를 이수하고, 교육·연구·사회활동 실적이 있으면서 구술 시험과 논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인정 고급 사회복지사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된 사람이 ‘인정 사회복지사 인증·인정기구’의 심사를 거쳐 일본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인정 상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운영 협의회, 장애인 자립 지원 협의회, 요 보호 아동 대책 협의회 등 지역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권리 옹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며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의 과제를 실천하고, 제휴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안에서 인증 고급 사회복지사는 지도·감독, 불만 해결, 리스크 관리 등 조직의 시스템 만들기, 지역의 기관 간 연계 시스템 만들기, 복지 정책 형성에 관여, 과학적 근거 기반 실천의지도 실천 검증이나 근거의 축적 등 기관과 분야를 뛰어넘는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지위가 명확한 편은 아니며 사회복지사라고 해도 노인 요양서비스 업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상도 높은 편은 아니다.¹⁸⁾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유무와 관련 없이 같은 분야에 종사가 가능하고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사회복지사 고용 의무가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보험 보험자에 해당하는 시정촌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란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영어 표기로 ‘소셜워커’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과 개호복지사 자격이 같이 도입되면서 두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요양서비스 제공과 같은 업무로 시작하고, 연차가 쌓일 경우 개호복지사도 욕구 사정이나 보호 계획 수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정 사회복지사나 인정 상급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숙련된 경력자를 구분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2011년에 자체적으로 도입한 자격이고 아직 법정 자격증은 아니다.

18) 김원경 교수(치쿠시 조가쿠엔 대학 인문과학부) 자문 내용임.

2) 사회복지사 자격제재 및 협회의 회원 징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근거법인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제3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년피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 또는 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 외에는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등록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또는 개호복지사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의해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명칭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및 정지의 권한은 후생노동성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고나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이외에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비밀 누설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제재 규정이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¹⁹⁾ 이는 신용 손상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밀 누설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와 같은 입법 미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원제기 창구나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협회는 본회 사무국은 물론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협회 사무국에 회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다. 창구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면 피 신청인이 본회 회원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와 함께 불만의 내용과 사유 발생 시기 등을 적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만 접수 처리 및 징계 절차 등에 대한 사례로서 ‘일반 사단 법인 예히메 현 사회복지사 협회 징계 등 기준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회의 징계의 종류는 훈고, 계고, 제명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징계 내용과 기준은 <표 24>와 같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불만 제기 접수에 따라 시작된다. 징계 대상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만 제기 없이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만 제기는 협회 회원 여부, 개인이나 단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불만 제

19) 김원경 교수 자문 확인 내용임.

기 대상은 협회 정회원에 한한다. 징계 심사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과 실천이 아니더라도 신용 실추의 우려가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신용 실추 행위란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및 행동 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사회적 신용을 잃는 행위를 말한다.

표 24. 일본 사회복지사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징계 종류	징계 내용	징계 기준
훈고	지도 · 구두주의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해당 회원 스스로 반성이 보이고 있으며,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계고	엄중주의 시말서 작성 유기의 자격 정지 처분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때, 회원 스스로 반성이 보이지 않으며, 고려해야 할 상황이 미미한 경우
제명	제명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때 해당 회원에게 전혀 반성이 보이지 않고, 고려해야 할 사항도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징계에 관한 사항은 기강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취급하며 불만이 접수되면 먼저 불만의 대상이 협회 정회원인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불만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불만 신청서 작성을 안내한 후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불만 내용, 사유 발생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조사·심사 개시를 결정한다. 이 때 일본 사회복지사협회로 심사를 위탁할지를 결정하고 그럴 경우 접수 사항을 협회에 송부한다. 심사가 개시되면 이해관계가 없는 조사원 3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조사 일정을 조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사회에서는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 결과를 결의하며 이사회는 보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처분이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한다. 심사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불복 신청 및 재심사 청구 기간을 갖고 불복이 있는 경우 재의결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재조사·재심사를 실시하고 불복이 없을 시는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징계 처분의 경우 일본 사회복지사 협회에 보고하며 징계 사항을 공개한다. 매체에 공개 내용은 일본 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호주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의 질 관리

1) 호주의 사회복지사와 자격인증 캠페인

호주의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과 집단의 사회적 욕구를 사정하고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며, 사회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복리와 인권, 사회정의와 사회발전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Department of Employment, 2017).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서비스간의 촉진자로서 활동하며 보건, 복지, 여가, 주거, 고용 등을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개발, 자활, 클라이언트 욕구,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고, 상담, 정보 제공, 중개, 의뢰 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보건의료의 연속선상에서 지역사회 보건, 재활, 건강증진, 정신보건, 임종 서비스(end of life service) 완화치료(palliative care) 등에 종사하며 공공 행정 분야에도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다. 그 외 난민, 가정폭력,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아동보호, 학교 등을 위한 서비스에도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 개업 사회복지사도 늘고 있다(AASW, 2014).

그런데 호주에서는 아직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없다.²⁰⁾ 호주는 2010년 전문직에 대한 국가 등록 및 인증제도(National Registration and Accreditation Scheme, NRAS)를 수립하고 이것이 호주의 보건의료 전문직 자격에 대한 유일한 공공 관리기구이지만 여기에 의사, 간호사, 약사뿐 아니라 임상심리학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척추지압요법사(Chiropractor), 검안사, 한의약사(Chinese Medicine Practitioner), 방사선사(Medical Radiation Practitioner) 등의 전문직 자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주 사회복지사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ASW 이하 협회)는 이 자격제도 안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호주사회복지사협회는 인증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림 4>와 같은 인증 사회복지사(Accredited Social Worker)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¹⁾ 인증 사회복지사는 협회에서 인증한 학위 자격을

20) 호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박홍재 교수(School of Social Sciences & Psychology, Western Sydney University) 자문을 받아 조사를 진행함.

가지고 있고, 협회의 회원이면서 윤리적 실천을 준수하고 협회의 불만 관리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연간 지속적인 전문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Mental Health Social Worker, AMHSW)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인증을 받아야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 정신보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역시 협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정신보건 및 관련 현장의 실천 경험을 가지고 또한 협회에서 인증하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지속 전문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DP)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4. 호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인증 마크



이러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 협회는 호주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인증 기준(Australian Social Work Education and Accreditation Standards, ASWEAS)을 가지고 있다. 회원 자격은 협회가 승인한 호주 고등 교육 기관을 졸업하거나 협회에서 인정한 해외 자격을 소지 한 신청자를 평가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인증 기준이 호주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한 교육과정은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게 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를 받게 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에 기대하는 학습 결과 <표 25>와 같다.

21) 호주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질 관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 (<https://www.aasw.asn.au>) 참조

표 25. 호주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인증 기준에 의한 졸업생 학습 결과

졸업생 특성(Graduate attribute)		학습 결과
1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사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입증 인권 기준(human rights framework) 내에서 사회사업 지식, 가치 및 윤리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 복지 분야에 지식을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수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2	사회적 실무 가치와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실천을 안내하는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인 가치와 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설명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윤리적 실천에 대한 혼신의 틀 안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3	다양한 설정, 클라이언트 집단 및 지리적 위치에있는 개인, 집 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사회복지실천 지식 및 개입을 적용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자본의 기본 이론, 원리, 개념 및 실천에 대한 일관되고 건전한 지식 실천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인지하고 있는 권한 부여 및 비억압적 실천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실천의 최근 발전에 대한 지식 전문 수퍼비전의 기준과 목적에 대한 이해 모든 핵심 커리큘럼 과목에 대한 지식 정책 이론적 틀을 포함한 사회 정책 개발,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지식 AASW 실천 표준에 대한 지식과 수행 실제로 이 지식을 적용 할 수있는 능력 입증
4	인권 및 사회 정의 기준 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 행동 및 사회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및 세계적인 실천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개발을 포함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실천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입증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및 생태계를 거버넌스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지식과 능력 불평등을 규명하고 설명하고 사회 정벽, 불평등 및 불의를 줄이기 위해 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실천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장애, 취약성 및 탄력성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구성 및 이러한 요소를 분석하여 실천을 알리는 능력 외상에 대한 이론과 그것이 기능에 미치는 영향,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지식과 가치를 재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을 알리기 위해 반사적 사고 능력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적 분석과 반사적 실천의 기준에 대한 지식 권력과 불이익의 차원과 계급, 성별, 연령,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성, 인종 및 민족의 영향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6	연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천을 알리고 실천을 통해 연구 조사를 개발, 실행 및 보급하기 위해 연구를 이해, 평가 및 사용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목표와 사회 정책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개입에서 증거 기반의 실행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프로젝트 작업 또는 연구 및 기금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연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 노동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능력 사회 취약 집단의 개인, 집단 및 공동체의 필요와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복잡하고 민감한 사회 문제와 문제를 탐구하여 사회적으로 결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 관계 기술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모든 방법에 대한 실습 기술과 그것이 근거로 삼는 이론/증거에 대한 이해 모든 종재 방법에 대해 구두 의사소통 기술을 시범하고 사례 기록, 보고서 작성, 연구 및 정책을 위한 서면 의사소통 기술을 시연 실천의 광의 및 협의의 수준에서 응호, 협상 및 조정 기술 구두 및 서면 형태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다양한 청중에게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 할 수 있는 능력.
8	다양성을 가지고 일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민과 토レス 해협 섬 주민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이를 연습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 호주의 비 원주민 문화와 토착 문화 간의 역사적, 현대적 경계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연습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과 연습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9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로 숙련 된 전문적인 실무, 책임 및 추가 학습을 달성하기 위해 감독의 가치와 사용에 대한 이해 추가 지식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과 실천을 통합하는 방법을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 평생 학습에 대한 의지 약속 사회 복지 실습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학습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2)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만 관리 절차

협회는 자체적인 사회복지사 전문직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인 윤리 불만 관리 절차(Ethics Complaints Management Process, ECMP)를 마련하고 있다 (AASW, 2010, 2016). 이 절차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최소 기준을 준수하게 함으

로써 대중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심각한 윤리적 비위(serious ethical misconduct)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비위 행위는 협회의 윤리 강령(AASW, 2010)을 참고로 심각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신고 된 행위가 심각한 윤리적 비위 행위를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 불만 관리 절차를 통해 접수하게 된다. 심각한 윤리적 비위 행위의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희롱과 같은 성폭력 행위
-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전문적 능력 범위 위반
-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 심각한 비밀 보호 위반
- 공공 안전 훼손 등 심각한 안전의 위험
- 사적 이익을 위한 심각한 행정 오류
-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하지만 경미한 불만족, 오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과 같은 사안이나 법적 판단과 같은 다른 기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 동료나 조직 내의 갈등에 관계된 사항은 심각한 윤리적 비위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윤리 패널(National Ethics Panel)이나 국가 윤리 패널 의장이 할 수 있다. 심각한 비위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협회는 다른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협회로 불만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불만 제기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된 사람(신고인)이거나 신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후견인, 협회의 회원 등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접수 여부는 국가 윤리 패널 의장이 판단할 수 있다.

불만 제기는 해당사항이 발생한 지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역시 국가 윤리 패널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신고는 협회 국가 윤리 사무소 (National Ethics Office)의 윤리 담당관(Ethics Officer)이나 국가 윤리 패널 위원에

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기하고, 신고인은 불만 관리 절차 진행에 대해서 협회에 협조해야 하고 피신고인 역시 협회에 협조해야 한다. 협회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신고 된 사안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국가 윤리 패널 의장이 가지고 있으며 해당 문제가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되거나 법정 소송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사나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연기된다. 불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윤리 담당관은 신고인에게 신고 사항에 대한 절차 진행 여부를 통보하고, 피신고인에게도 불만 사항을 통지한다. 피신고인은 통지 후 2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윤리 담당관은 국가 윤리 패널과 협의하여 조사나 청문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 윤리 사무소에서 조사관을 선임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면 조사관은 조사 후 보고서를 국가 윤리 패널 의장에게 제출한다. 청문이 진행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청문에서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 청문을 통해서 불만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조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입장을 피력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추가 증거를 제출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문 패널(Hearing Panel)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청문 후 28일(평일 기준)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는다.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모두 판결에 대한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 윤리 패널에서 이의제기 패널(Appeal Panel)로 넘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 패널은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린다. 청문 패널이나 이의제기 패널은 불만 제기 사항을 기각시키거나, 별금, 조건부 실천, 공식 경고 등을 내리거나, 회원 자격 정지나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협회의 이사회는 회원들의 윤리 행동 기준과 윤리 불만 관리 과정이 효과적으로 불만 제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국가 윤리 패널을 선임한다. 국가 윤리 패널은 윤리 불만 관리 과정을 총괄하며 인력풀을 관리하여 이 중에서 청문 패널과 이의제기 패널을 선임하고 조사를 수행한다. 윤리 담당관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 담당관이 불만 접수, 검토, 절차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5. 소결

1) 국가 간 사회복지사 제도와 자격제재 체계의 비교

이상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자격제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위상은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자격 제재 제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격제재 제도는 영미권이나 아시아권이나와 같은 문화적 지리적 배경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주로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느냐,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느냐와 같은 활동 영역의 구분도 아니고, 그 나라의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위상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로 지방정부를 주된 활동 현장으로 삼으며 아동 또는 성인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지방정부의 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교육 기준, 실습 기준 등은 매우 분명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기준도 매우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적용되고 있었다. 자격관리에 있어서도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전문직 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관리는 자격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재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위원회에 사회복지사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다른 등록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민원제기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처리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전문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총 4개의 법정 산하 위원회 중 3개가 전문직 제재에 관련된 위원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은 전문직 위원회의 핵심 사명이 '대중을 보호'한다는 것임을 반영하고 있었다. 민원 제기 시 사례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별 패널에 배정이 되어서 진행되며 청문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보건의료 및 돌봄 전문가 재판소(HCPTS)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처분 사례를 유형별로 공개하고 있어서 관계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돋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행동 건강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뉴욕주의 경우 숙련 사회복지사(LMSW), 임상 사회복지사(LCSW),

청구 임상사회복지사(LCSW-R)로 자격이 구분되며 각 자격기준마다 역시 교육과정, 실습기준, 경력기준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각 자격마다 사회복지사의 권한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가령 LMSW는 감독하에 실천이 가능하며, LCSW-R은 서비스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뉴욕주에서 사회복지사는 다른 50여개의 다양한 전문직을 관리하는 뉴욕 주정부 교육부 산하 전문직 사무소에서 자격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전문직 사무소에서는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증명 등의 등록 업무를 비롯하여 전문직 징계와 정보 제공 등 전문직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이 전문직 사무소에 의해 다른 전문직과 함께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전문직 사무소에는 별도의 전문직 징계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으면 조사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공개되지 않는 서면권고나 행정경고를 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과 자격 정지, 자격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징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내용은 전문직 사무소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징계 날짜와 전문직의 설명으로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과 미국은 전자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후자는 주로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성격도 전자는 아동과 성인 서비스를 책임지고 후자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등 매우 다르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매우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매우 유사한 자격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러한 사회복지사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 때문에 그만큼 이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제재수단 역시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전문직도 규제하는 별도의 국가 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성과 전문직의 독립성 사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었다. 영국의 전문직 위원회와 미국 뉴욕주의 전문직 사무소 모두 정부부처의 직속기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 전문직 위원회의 경우 정부부처가 아닌 왕실 추밀원에 의해서 규제 대상 전문직과 그 이외의 인사를 반반으로 구성하고 있었고, 뉴욕주의 전문직 사무소는 주 의회에 의해 선출된 임기제의 교육위원회에 의해 지휘를 받고 있었다. 이 교육위원회는 전문직별 주위원회를 임명하고, 자격취소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격제재 체계도 명료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정노력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정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부여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기관이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의 위상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취약하였다. 호주의 경우에는 아예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가 없어 이를 위해서 호주사회복지사협회가 별도의 인증 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 자격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격제재 체계 역시 법상으로 있지만 입법이 미비하거나 협회 자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와 법적으로는 유사하게 허위나 부정한 사실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은 경우와 그 외에 신용 손상이나 비밀 누설과 같은 경우 자격 정지나 취소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입법미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규정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질을 관리여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회원 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 도도부현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민원제기 창구를 마련하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 자격제도가 아직 없는 호주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체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리 불만 관리 절차(ECMP)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별도의 국가 윤리 사무소와 윤리 담당관, 국가 윤리 패널을 두어 사회복지사의 비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2)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마다 다른 사회복지사 자격의 위상에 따라 자격 제재 체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제재 제도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례를 구분하여 보면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권한이 매우 분명한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상대적인 독립성도 보장되는 엄격한 불만 처리 절차와 자격 제재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권한이 불분명한 나라인 경우에는 국가의 자격 제재 제도는 불명확하거나

없는 반면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질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인 회원 자격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협회 자체적인 제재 체계는 그 나라 안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중간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호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유사한 자격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사회복지사 자격은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를 책임지거나,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 자격에 따른 권한이 명확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나 취소 등 제재 체계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위상을 반영하면서도 일본과 호주 사례에서 보이듯이 자체적인 위상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제도를 기반으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정지나 취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자격관리 기구를 설치할 만큼은 아닌 상황이므로 사회복지사협회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 또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더욱 엄격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의 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

1. 보건의료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엄격한 질 관리가 요구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의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간호사 자격 제도

간호사(Registered Nurse, RN)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지칭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대학(4년제) 또는 전문대학(4년제, 간호과가 설치된 85개 전문대학 중 81개 대학이 4년제로 개편)의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간호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발급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²²⁾

(1)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간호사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③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22)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urse.or.kr>)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함
-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③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④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제347조, 보건법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시험 개요 및 합격 기준

시험은 8개 교과목(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 법규) 295문항 295점 총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3) 근거법령

간호사의 면허시험과 관련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 시험 : 의료법 제7조
- 결격사유 : 의료법 제8조
- 국가시험 : 의료법 제9조
- 응시자격 제한 : 의료법 제10조

2) 의사 자격제도

전문적 의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에 필요한 기예를 갖추고, 건강과 질병 진단, 질병 치료와 예방 및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사하는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의료법 제 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 규정은 생략함). 즉,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

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의료법 제8조에서는 결격사유로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④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한 의료법 제 10조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응시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 개요 및 합격 기준

시험은 3개 교과목(보건의약관계법규, 의학총론, 의학각론) 360문항 360점 총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 득점
-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②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3) 근거법령

- 응시자격 : 의료법 제5조
- 결격사유 등 : 의료법 제8조, 제10조
- 합격자 결정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3) 의료인 자격 관리

(1)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의료인 직종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면허자 및 활동의료인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지속적 질 관리가 필요하나 기존 보수교육 이수율이 낮아,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의료인 면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09.7.30). 이후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09.11월)하였으며 그 결과 의료법 개정('11.4.28 공포, '12.4.29 시행)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4.27공포, '12.4.29시행)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의료인은 최초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 이수 시에는 신고 반려 가능
- ②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③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12.4.29~'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 ④ 각 중앙회²³⁾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이와 같이 의료인의 경우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 시에는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현황(해당자 한함)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 ①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② 면허 미신고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③ 따라서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됨
- ④ 단,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23)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중앙회로 지칭함

이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의료인 면허신고제 근거법령 요약

<의료인 면허신고제 근거법령 요약>

의료법 개정·공포('11.4.28)로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 시행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신고 반려 가능

의료법 제 25조(신고)

-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 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 제 66조(자격 정지 등)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부칙<법률 제 10609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 11조(신고)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자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20조 (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⑤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 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의료인 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인의 행정처분에는 업무정지, 자격 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부당이득금 과정금 부과, 면허취소 등이 있다. 이 중 여기에서는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 정지와 면허취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자격 정지

① 근거법령 : 의료법 제 66조 자격 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③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 ④ 태아성감별 행위를 위반한 경우
- ⑤ 무면허의료행위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기관 개설자가 이 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그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음)
- ⑧ 전자의무기록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이에 따른 자격 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중앙회의 자격 정지 처분 요구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자격 정지 처분의 효과

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또한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을 이유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나. 면허취소

㉠ 근거법령 : 의료법 제 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제8조 결격사유(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3년 이내 특정지역이나 업무 종사)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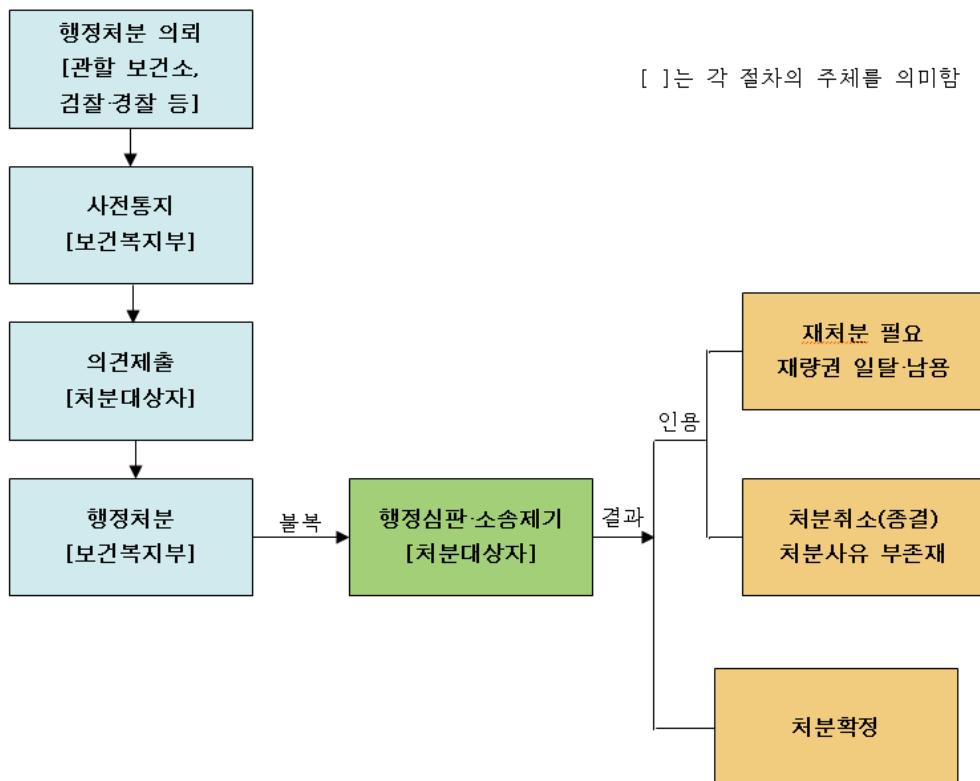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 행정처분 절차

의료인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 정지나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²⁴⁾는 다음 <그림5>와 같이 진행된다.

그림 5. 의료인 행정처분 절차



24)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의료 부분 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p.4

① 보건소, 경찰, 검찰 등이 보건복지부로 행정처분 의뢰 : 관할 보건소는 자체 의료지도 추진계획 및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현장을 방문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수하여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의료자원정책과)에게 의뢰한다. 의료기관 등의 인허가 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이 의뢰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대상에게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 : 보건복지부에서는 통보된 행정처분의뢰에 대하여 의료인(처분대상자) 등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을 보낸다.

③ 처분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제출 : 처분대상 의료인 등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제출한다.

④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는 경우 대상 의료인에게 행정처분하고 의뢰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한다.²⁵⁾

이에 해당하는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다.

표 27. 행정절차법 제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위 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 기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간음한다 (이하 생략)

25) 출처 : 보건복지부, 2015, 의료 부분 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p.4

⑦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에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행정처분에 불복종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내용에 의거한다.

-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하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한다.

-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4년 말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서는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 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의료인이 불복한 의료관계처분 중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폐소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

한 처분, 기타 의료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내의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위원들은 관계공무원, 의료인, 법률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하명호, 2016 : 75).

라. 직능단체(협회) 차원의 사율규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관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협회 산하에 각종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로는 고발 또는 행정분 의료,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이 있다(하명호, 2016).

4)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1)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2015년 기준 최근 4년 간 이뤄진 의료인 행정처분 중 의사직의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최근 의사의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

(단위 : 명)

위반유형	'10	'11	'12	'13	'14	최근 5년	
						평균	계
계	450	410	816	204	279	404	2,012
진료비 거짓청구	76	119	129	33	26	74(18.3%)	368
직무관련 금품 수수	8	4	153	27	32	41(10.1%)	204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47	35	78	14	15	36(8.9%)	182
사무장 병원	43	23	54	11	12	29(7.2%)	143
의료기사 업무범위 이탈	22	37	50	14	13	25(6.2%)	127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24	25	50	12	21	24(5.9%)	122
진료기록부 미기록	18	15	38	11	18	19(4.7%)	94

* 출처 : 보건복지부,(2015), 의료 부분 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p.3

이 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유형은 진료비 거짓청구이며 그 다음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금전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기존 연구들 중에는 현재 의료인 면허제도 중 규제나 징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들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견 청취제도의 개선 : 자격 정지과정에도 청문 실시 의무화 필요

하명호(2016)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행할 때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청문의 필요성도 규정하고 있지만(의료법 제84조, 행정절차법) 이는 면허의 취소에만 명시되어 있고 면허자격 정지처분은 불포함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스스로 청문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약식 절차인 의견 제출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격 정지의 경우에도 청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전문직의 자율규제 강화 : 직능단체에 징계권한 부여

자율규제란 전통적인 행정임무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책정한 규율에 맡기고, 그 자율적인 규제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여 엄격히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국가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참여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며 피규제자의 신뢰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관을 기준으로 전문 직능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독립위원회 형태의 자율규제, 분쟁조정기구의 자율규제, 각종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이나 정지에 대한 자율규제는 전문 직능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제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의료법 등을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면허의 박탈이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율규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주장이 있다(하명호, 2016).

다만, 이와 같이 자율규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를 의사들만으로 폐쇄적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이용자인 환자를 포함

한 비의료인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하명호, 2016).

다.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도입 : 회원의 질 관리 강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발급 이후 면허를 관리하고 국민의 불만과 민원을 해결하고 의료인의 질 관리를 하는 주체는 찾기 어려우며 이 부분은 대부분 법률시장에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법에 명시한 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법률 구조에 따라 심각한 의료사고는 법정에서 다루어지지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의료행위 자체로 의료법에서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근거는 없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위한 이의 단체로 의사면허 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보수교육을 통하여 의료인의 질 관리를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선언하고 회원의 민원이나 일반인의 민원을 다루는 기능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자체 전문가 사이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기에는 그 기능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측면에서 협회의 회원의 질 관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허선·정명원, 2013).

2. 교육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1) 교사 자격제도

교사, 즉 교원 자격은 일정 기준에 달한 자에게 교육자의 자격을 명시해 주는 증명서로서 우리나라의 교원은 그 종별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법정 자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되나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교사 자격(정교사 1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등학교 교사 자격

-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 · 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초등학교 교사 자격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학교 교사 자격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1) 교사 국가시험 제도

교원자격은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24160호)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며 자격증을 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2) 교사의 자격관리

가. 징계사유

교사는 자격관리를 위해 징계제도를 두고 있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수행되는데 여기서 징계사유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사유로 삼은 교원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을 말하며, 각호의 내용들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명령의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태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 등의 경우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표 29. 징계사유가 되는 교원의 비위 유형

가. 성실의무 위반
⑦ 공금횡령 · 유용 업무상 배임
㉡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의 문란
㉙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 도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㉚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㉛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㉜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 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㉞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
나. 복종의무 위반
㉟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㉟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다. 직장 이탈 금지 위반
㉟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이나, 무단 결근이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라. 친절 · 공정의무 위반
마. 비밀 엄수의무 위반
㉟ 비밀의 누설 · 유출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개인 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㉙ 개인 정보의 무단 조회 · 열람 및 관리소홀 등
㉞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바. 청렴의무 위반
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㉟ 성희롱
㉡ 성매매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㉟ 성폭력
㉙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㉛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사.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 엄리 업무 및 겹직 금지의무 위반
자. 정치운동 금지 위반
차.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나. 징계처분²⁶⁾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종으로 구분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2는 이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분류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 직위를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원 신분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배제징계와 교정징계로 구분되는데, 파면과 해임은 교원신분이 완전히 해제된다는 의미에서 배제징계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교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교정징계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의 별표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비위 과실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단계는 기본적인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단계는 주로 해임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기타의 의무 사항 위반에 대해서만 강등 정직 등 배제 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단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인 감봉의 처분도 가능하나 4대 비위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의 경우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배제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교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 조치로서 특히 파면의 경우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이 생존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앞에서 확인한 교육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적 입장 등이 교육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배제징계를 적용하는 징계 사유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26) 이 내용은 엄상현(2016) p.106의 징계처분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2) 징계처분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가. 징계처분 현황

기존 연구에 따르면(엄상현, 2016), 2014년과 2015년 한 개 도내의 징계교원 수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이 높을수록, 남자 교원일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교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단일 사유로는 음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문제, 회계·청렴 등 금품 문제 순이었다.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4대 비위에 해당되는 성, 성적, 폭력(체벌), 금품 관련 비위는 전체 사건의 30% 정도를 차지하였고 이 중 성관련 비위 사건수가 가장 많았다. 법에 규정된 의무 행위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음주와 성 사건이 포함되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성실의무 위반사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징계 처분별 분포를 보면, 일반적인 경향은 징계의 정도가 약할수록 처분징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가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가장 많았으며 정도가 가장 강한 과면은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과면과 해임을 합친 배제징계의 비율을 보면 교원 중 적어도 10명 중 1명은 교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강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된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교사 징계제도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엄상현, 2016).

① 교사와 관리자 간 징계 양정의 균형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있는 교원에 의하여 특히 4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 현실에서 교사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4대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

기 때문에 관리자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강등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검토

징계 처분으로 ‘강등’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강등 처분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특별한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강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중징계로서 높은 강도의 배제 징계와 아주 낮은 경징계의 사이에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선의 대안적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교원 징계와 관련한 정보 공개 확대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교권 존중 등의 과제와 관련된 교원징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기 때문에 징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보육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2조 및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교부가 진행되고 있다. 보육교직원 자격종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 장애아전문/일반/가정/영아전담/40인 미만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1급/2급/3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

보육교직원 자격증(확인서) 교부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자격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설치·운영).

표 30.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교부절차

신청 및 서류제출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인터넷 신청 수수료 결제 서류제출	서류검정 결과 자격기준 충족 시 인정 판정 서류검정 결과 자격기준 미충족 시 보류(보완서류 제출) 또는 불인정 판정 서류검정 결과 특수사례 해당 시 자격검정 위원회 심의	자격증(확인서) 제작 자격증 발송

(2) 보육시설종사자 자격 관리

가. 자격 정지

보육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 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 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 기준

①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그 밖의 경우

②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③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⑤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⑦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준

①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그 밖의 경우
 - ②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자격 취소

보육교사가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③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④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⑤ 자격 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⑥ 자격 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 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⑦ 자격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함(「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

- ③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 ③ 예 해당하는 경우 :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음)

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그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 48조 위반)

② 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③ 청문 통지 및 실시(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통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실시

④ 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결정 및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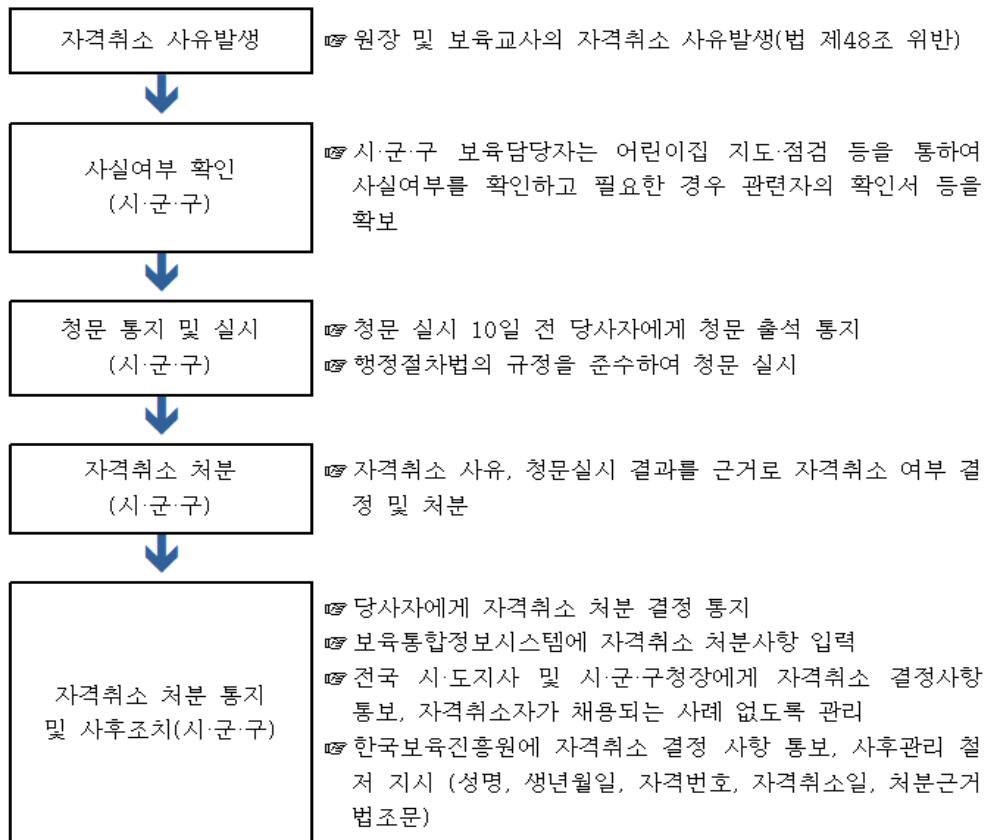
⑤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전국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 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

다.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 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보육교사에 대한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의 사항을 공표²⁷⁾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

27) 이러한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짐(「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 및 제3항)

그림 6.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처분 절차



3. 법조분야 자격제도 및 자격 정지, 취소 현황

1) 변호사 자격제도

가. 변호사 자격

변호사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활동을 한다.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 · 위촉을 받아 소송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로 학력에 제한 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사법연수원과정을 수료하면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8년부터는 폐지될 전망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로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3년간 수학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다.

나. 자격 관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995년 변호사법이 개정되고 동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1996. 6. 30. 이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1심으로서 모든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자체적인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에 대한변협은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였고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법조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사유로 영구제명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호사 징계의 엄격함과 공정함을 강화해 왔다. 2006년에 발간된 변호사 징계 사례집을 살펴보면 과태료, 정직, 자격상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2006. 변호사 징계사례 4집).

회계사²⁸⁾,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직능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직능별로 독립된 의결기관인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① 징계의 종류

거기에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자격과 관련된 결정하게 된다(변호사법 제93조 제1항). 해당 징계권자가 등록취소, 직무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을 내리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계의 양정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포함한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공인회계사의 징계절차를 예로 들면, 회계사에 대한 징계권자는 금융위원회이지만 반드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해 의결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공인회계사법 제48조).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그 소속 상근 부회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중 1인,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1조).

표 31. 변호사법 제 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3.28.)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 할 수 없다.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의5(이의신청)

-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 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자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1.7.25.>
 -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1.7.25.>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자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01조(위임)

-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업무정지명령)

-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종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자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타 전문직의 자격관리제도 중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주는 의미와 그에 기반한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직능단체든지 그 전문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처벌제도를 통해 자격이나 면허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신념은 동일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가는 노력을 해 하고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역시 이러한 행보를 같이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둘째, 따라서 각 직역은 전문직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질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징계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직업적 특성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의료인이나 교육자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크고 자체적인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능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이게 때문에 자체규제에 상당히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는 그 직무상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는 사회복지사를 어떤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준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징계제도도 국가의 공공체계 안에서 자격증 발급과 징계제도가 수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는 의료인이나 교육자과 같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직업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각 직능단체는 이러한 질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경우 국가개입이 아닌 자체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그 권한도 직능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자격에 대한 규제권한이 공공(국가)과 민간(관련 직능단체) 중 어디에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을 기반으로 하는데 민간의 자체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규제가 너무 법적인 차원에서 강도 높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윤리적 사례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각 직역별로 이러한 규제절차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청문절차 확대도입, 위원회 구성요인의 다양성 확보, 징계종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계는 아직 이런 이슈들에 관한 연구가 별로 진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넷째, 자격제도의 질 관리 일환으로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 윤리적, 법적 위반사

례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거나 연구되고 있었다. 이는 징계현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적, 수량적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징계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회원들 뿐 아니라 대 사회적으로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와 같은 타 직역에서의 징계를 포함한 질 관리 논쟁과 규제시스템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의 징계제도 외에 사회복지사 직능단체 자체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징계권한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다.

제 3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연구결과

제1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1. 초점집단면접조사 목적 및 개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된 현장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그 유용성이 있다고 하겠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집단과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2개 집단으로 각 1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2017년 11월 1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대략적인 면접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 시 연구진이 모두 배석하였다. 면담 진행은 본 연구진의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이 전체적인 면담과정을 이끌었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진은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이후 면담내용을 전사하여 전사본을 작성하고 연구진이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일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일차분석 후 선별된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범주 및 주요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은 원자료, 도출된 소주제, 대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면담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대상자 정보는 아래의 표 내용과 같다.

표 32.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자

회차 및 일시	참여자	성 별	연령대	직위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집단	김OO(A)	남	30대	팀장	종합사회복지관
	남OO(B)	여	30대	사회복지사	지역아동복지센터
	박OO(C)	여	40대	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양OO(D)	여	30대	팀장	요양원
	최OO(E)	여	30대	과장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지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 집단	김OO(F)	남	50대	팀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박OO(G)	여	30대	부장	A협회
	신OO(H)	남	30대	국장	사회복지관련노조
	윤OO(I)	남	40대	위원	B협회
	정OO(J)	여	40대	국장	C협회

2. 초점집단면접조사 도출 개념

1) 사회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집단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및 지원기관 종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과 생각 속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점집단 면접 조사에서는 크게 5가지 상위범주로 구분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첫째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 둘째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셋째 제도 운영의 방법, 넷째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효력의 문제, 다섯째,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위범주를 대주제로 하여 각 범주마다의

구체화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주제에 따른 초점집단면접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총 21개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도출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

상위범주	개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한 금품수수 ② 공공자원의 사유화 ③ 성폭력 및 성희롱 ④ 클라이언트 인권침해 및 학대/ 폭력 ⑤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위반 ⑥ 불성실 및 전문성의 부족 ⑦ 품위유지 위반 ⑧ 기타 모호한 영역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성의 제고 ② 자정기능 강화
제도운영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고한 피해자 방지대책 마련 ② 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 확보 ③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위원구성 ④ 책무와 권리의 균형 필요 ⑤ 윤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⑥ 철저한 비밀 보장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효력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 ② 맞고소의 가능성
장기적인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의 강화 ② 자격취득 절차의 강화 ③ 자격갱신제도 도입

3.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면접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

연구 참여자들은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①부당한 금품 수수, ②공공자원의 사유화, ③성폭력 및 성희롱, ④클라이언트 인권침해 및 학대, ⑤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위반, ⑥불성실 및 전문성의 부족, ⑦품위유지 위반, ⑧기타 모호한 영역 등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부당한 금품 수수나 공공 자원의 사유화와 같은 금전적 비리,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성적 문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학대나 폭력 등 이 세 가지 사항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 부당한 금품 수수

연구 참여자들은 규정상으로 포함된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자격 정지 및 취소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특히 시설 입소나 서비스 등의 이용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일종의 뇌물 등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금액이 높지 않을 경우 법률 상 처벌의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품 수수 등의 상황으로 형사 처벌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장애인활동보조 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활동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 부모님들께 어떤 선물이나 이런 고가의 그런 것들을 받고 이런 일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D/요양원 팀장)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을 때. 예를 들면 장애인거주시설은 들어가기 힘든 시설도 있죠, 되게 잘 돼 있는 데는. 그런데는 그렇다고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일부 사례들도 나왔었던 게 입소하는 데 5,000만 원 이런 경우들이 실제 있었어요.”(E/노인복지관 과장)

나. 공공자원의 사유화

연구참여자 E는 서류 위변조를 통한 자원 유용 및 횡령 역시 사회적 손실을 막 대하게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역시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인과 변호사 등의 경우 서류 위변조 및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 의료인의 최대 면허취소사유는 의료과실이 아니라 불법적 리베이트 및 서류조작 등을 통한 부당 보조금 청구였다. 또한 국가보조금의 횡령 및 유용은 중대한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청구했을 때. 이런 건 활동보조인이나 의료인이나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면허취소를 당한 케이스는 직접적인 어떤 의료과실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연해 있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노인복지관 과장)

“자기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금유용이죠. 유용.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고 유용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그런 허점을 악용해 가지고 본인이 쓰고 다시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해임, 파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회계라는 게 지출을 하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총계주의에 위반해서 입금을 안 하고 써버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도 디테일하게 잡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 취소하는 규정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협회 위원)

보조금 청구 시의 서류조작 등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자원을 개인이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라고 여겨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등을 연구 참여자들은 예시로 들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서 반드시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원장님아, 이거는 기관자산이죠. 차. 관용차처럼 본인이 사용하는 거 그런 문제들,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법인에서 원장 해임 선에서 끝난 사건들 있었어요.”(E/노인복지관 과장)

“어떤 특정재단 산하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횡령이나 이런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들…… (중략)…… 법 안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이거나 별금을 내거나 이런 정도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법인 산하의 다른 기관으로 같은 직책으로 옮겨 갔습니다, 관장, 부장으로.”(E/노인복지관 과장)

“사실 어떤 기관이나 협회도 마찬가지고 기관에 속해 있는 어떤 차량을 기관장의 차량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E/노인복지관 과장)

“돈이 아니라요, 어떤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관용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돈이 아닌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법에만 저촉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되게 조alan한 건데 김장김치 가져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거든요. 자기 집 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 이게 되게 작은 거지만 그게 결국 커진다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J/협회 국장)

“예를 들면. 그리고 직원들이 받아야 될 돈을 따로 한다라든지 후원금이나 물품 들어온 것을 유용하고 이런 거를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기관장은 정작 무슨 조치 이렇게만 내리고 아무 징계도 안 받고요.”(J/협회 국장)

연구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이들의 연금 등을 횡령한 행위역시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통장을 맡기거나 하잖아요. 그걸 사회복지사들이 대행해서 관리해 주는데, 정말 그야말로 은행에 못 가시니까 그걸 개인이 횡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테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금을 받았는데 매번 행정적으로 결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착복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J/협회 국장)

다. 성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 및 성희롱 역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겨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현장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폭력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적 폭력에는 “관장님”과 같은 권력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주위에서 보이다 사라지는 “관장님”은 성추행 아니면 횡령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I는 성추행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복지계에서 어떤 말이 있나 하면 갑자기 관장님이 보이시다가 사라지면 둘 중에 하나다. 성추행 아니면 횡령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가끔 어떤 관장님은 썩 사라지시고 어디론가 안 보이시는, 자취를 감추시는 일이 간혹 발생하죠? 그래서 기관 내에 직원에게,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북이 발달하고 여성분들이 성추행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고 밝히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종종 관장들의 성추행 문제를 사실은 저도 접하게 되거든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에 의해서 자활근로 하시는 여성분에 대한 성추행 집단민원을 받고 바로 즉시 그 직원을 면직 처분하고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그분이 노동부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자격이 정지되는 건 필요하지 않나, 형이 확정시까지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그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로 직무를 계속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I/협회 위원)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 저희 기관 내에서 직원들끼리 상사가 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있었어요. 성추행은 범죄, 어쨌든 장애인사업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근무를 못하거든요. 어쨌든 기관에서나 법인에서는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해고를 처리했죠.”(F/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무관)

“아까 말씀하신 성이나 학대의 문제는 현장에서 우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어떤 우월적 지위가 꼭 시설장 아니더라도 동료 간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분명히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예에 계속 근로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 현장에 같이 놔두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생활인이나 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가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자격의 정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I/협회 위원)

라. 클라이언트 인권침해 및 학대/폭력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등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공감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장애인 생활시설과 아동보호시설등 생활시설 내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다른 사회복지사의 폭력 혹은 인권침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지사의 심각한 윤리위반이기 때문에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요건이 되어야 함을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성적 폭력 또한 대단히 위험한 사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직원이 있는지 모르고 한 직원이 그분한테 변을, 배변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징계를 하는데,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라고 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외부인원으로 대부분 구성이 된 인권지킴이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바로 의뢰를 했고, 그 사안은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고요.”(E/노인복지관 과장)

“아동상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동의 인권 문제라든지 아동학대 문제가 요즘에 이슈화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아동한테도 그게 많이 들어가고요. (중략) 올 초에 그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동복지시설 전체 아동인권조사가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아동 상담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 사회복지사는 형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C/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2년 전인가 K라고 하는 시설에서의, 그리고 작년인가 폐쇄된 J라는 시설... 같은 범인 시설이었는데, 직접적인 폭력 가해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뼈가 부러지고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시설 폐쇄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전에 법이 적용이 안 됐으면 그분들은 여전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유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E/노인복지관 과장)

“또 한 가지 다른 사례는 ... 정말 노인들한테 언어적인 학대를 하는데, 젊어서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듣게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혼자 집에 가서 생각하면 자기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직원들 앞에서 말하거나 클라이언트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전혀 없다는 게 조금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G/협회 부장)

“제가 근무하던 장애인시설에서도 운전기사가 장애인을 학대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다 동일하게 그냥 방관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전 불감증이 생겨갖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다 밝혀진 사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였던 운전기사는 정말 거기를 그만뒀지만 나머지 사회복지사들은 또 그 상태로 거기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G/협회 부장)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존중하는 가치를 갖고 일하는 복지사들이 그게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성적이든 학대, 폭력이 있어서는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사례라고 보여지고요.”(I/협회 위원)

마.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위반

2018.4월 시행예정인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기타 심각한 직무수행상의 문제”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자격 정지 및 취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구 참여자 A는 윤리강령 위반 역시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법적으로 별금 혹은 금고의 형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윤리강령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F는 사회복지사 자격 내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고, 윤리적 문제로 인한 업무관련성의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실상 윤리강령은 여기서 논의되는 다른 범주들을 포함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기준으로서 사회복지사 윤리, 또는 윤리강령을 논한 것이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한다.

“윤리에 위배가 되지만 법적으로 갚을 경우에는 무죄 쪽에 가깝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 정도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윤리강령이 저희 쪽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A/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이 윤리성이 얼마나 중대한 조건이냐, 자격이냐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이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운전면허도 윤리나 법률적으로 준법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안이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업무 관련한 관련성이나 손해도 있으니까 손해도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F/사회복지전담공무원 주무관)

바. 불성실 및 전문성의 부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불성실이나 전문성의 부족이 자격 정지 및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연구참여자 D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강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표현을 통해 실제로 사회적 손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민감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습기간 중 평가 후 종료하였고,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불성실이나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점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일부 종교법인 내에서의 인사발령 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손실이 심각하지 않은 불성실과 전문성 부족을 자격 정지 및 취소 조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성실 및 전문성 부족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손해라는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자격 정지 및 취소 조건을 포함할 경우 과도한 금지가 작동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저희도 얼마 전에 수습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되게 강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으로 민감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수습기간 중에 그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그냥 수습을 종료하는 정도로 끝냈는데..”(D/요양원 팀장)

“종교법인 운영 특성상 저희 운영위원, 관장이 되는 자격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7번 조항에 운영위에서 결정되면 가잖아요. 거기에 평가지표 할 때 1급 넣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에서 맹맹맹 하면 오시잖아요. 자격 없이도 오시는데, 종교법인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암암리에 종교도 강요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법인적립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종교법인이 안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구조가 이런 게 다 얹혀 있다 보니까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사. 품위유지 위반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성차별적 발언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로 부적합하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여자”가 문제라고 발언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기관 내 징계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실제로 자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한 연구참여자는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특정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 종사자들을 뽑아서 해외로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협회에 있는 국장이 대놓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문제야. 여자가 문제고… 특히 나이 많은 여자” 이런 언행을 쏟아냈는데 징계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문제제기 하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그 협회 국장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E/노인복지관 과장)

아. 기타 모호한 영역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요건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모호하다고 하였던 사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형법 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점이었다. 법률 상 범죄라 하더라도 휴먼서비스의 특성 상 자질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시 일치되지 않은 관점을 보였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나 동료에 대한 성 범죄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성 범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연구참여자 (D/요양원 팀장)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자체에 높은 윤리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격 정지 및 취소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취업에 제한을 받지만 사실 어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동시설에서 받아줄 거냐의 문제는 사실 아동시설은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C/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실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안에 그 정도의 자질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단 클라이언트에 직접적으로 뭔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이런 걸로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격 정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D/요양원 팀장)

“중대과실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중대과실인지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세분화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중대과실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우리가 요즘 고의성이 아닌 그런 과실들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랄지, 내가 정말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사기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계없이 그냥 사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어떻게 가려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금고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금고형을 받았는지,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연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 과실에 의해서 났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소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뜻하지 않게... 솔직한 얘기로 본인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셔 가지고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썼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사기죄가 돼버렸는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사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인가”(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그리고 최근에는 관련된 정신장애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 예전에는 질환으로 봤지만 우울이나 사실 강박이나 장애나 공황 이런 걸 겪고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자신이加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한번 진단 받았다고 해서 자격의 취득이나 이걸 제한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금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I/협회 위원)

2)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때 기대되는 효과로 연구 참여자들은 ①전문성의 제고, ②자정기능 강화를 언급하였다.

가. 전문성의 제고

연구 참여자 E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집단 내에서 스스로 견제하며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타 전문직에 비해 쉽게 자격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자격취소나 정지에 대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실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자체적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우리가 이 정도 자격조건이나 윤리적인 걸 갖추고 있다라는 정도, 자정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E/노인복지관 과장)

나. 자정기능 강화

또한 제도도입을 통해 자격 정지나 취소가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임 혹은 일선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기관장이나 관리자 급의 사회복지사 비위행위가 문제인데 현재는 기관 내부적으로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장이나 관리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효과를 갖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소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그게 좀 자정되는, 아예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 너는 인권침해하거나

조금 문제 생기면 자격취소 할 수 있어.” 기관장 협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장 그렇죠. “당신도 똑같다. 기관의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 다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서로 조심하고 더 좀 윤리적으로 하려고, 안 되는 걸 법률 위반하는 거니까 좀 그런 기대는 있어요.”(E/노인복지관 과장)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거니까요.”(J/협회 국장)

“실효성의 부분에서 이걸로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그런 정도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자꾸 환기시키고 이 현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 듣 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저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J/협회 국장)

“이런 게 만약에 저희가 뭔가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누군가가 이거 의뢰했어요. 기준에는 구에서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지만, 한사협의 어떤 기구 차원에서 그 사람한테 조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J/협회 국장)

3) 제도 운영의 방법

제도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①무고한 피해자 방지대책 마련, ②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 확보, ③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위원구성, ④책무와 권리의 균형 필요, ⑤윤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⑥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가. 무고한 피해자 방지대책 마련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무고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여기고 있었다.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의 경우 업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민·형사상 입증된 손해가 있어야 자격취소 및 정지가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윤리

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하고 심사하게 될 경우 자칫 무고한 사회복지사가 신고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B는 이의제기 접수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E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자칫 사회복지사에 대한 불만이 비윤리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제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물론 시설 내 아동의 인권보호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지만, 생활시설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겪는 다양한 공감피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제보가 악용될 경우 시설 사회복지사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 역시 향후 제도운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억울한, 당사자가 혹시 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되고..”(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취소는. 실제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돼 있는데,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관리자 이상급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고한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통제수단 또 다른 어떤 기관장들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심의조정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아동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복지사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또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훈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법적으로도 다르고 인식적으로도 달라졌죠. 그런데 이미 퇴소를 하고 나간 아이가 사회복지사가 맡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남효진)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무고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위로 제보한 자, 그럼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되잖아요. 피해자구제절차가 있어야 하는가 이 문제랑 무고한 사람을 허위로 했을 때, 회부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 기구가 정말 상담센터가 돼버릴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그런 특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런 징계위 회부가 난무해질 수도 있고 통제수단으로, 직원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E/노인복지관 과장)

“그게 악용된다기보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보면 기준이 이게 현재 법에서 이런 기준으로 써놨다는 건 좀 저는 너무 책임감 없게 써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이게 고의라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그게 또 고의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중대한 과실 일 때, 정말 큰 과실일 때 그것 때문에 자격취소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평가할 거냐라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은 또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J/협회 국장)

나. 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 확보

무고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보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었다. 이는 익명으로 할 것이냐, 기명으로 할 것이냐의 단순한 문제라기보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절차가 보다 엄격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B는 기명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징계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비밀보장은 정말 필요한데요. 저희도 기관에서 전의함 할 때 전의하신 분이 개인 이름 안 쓰고 연락처 안 쓰시면 공식 전의로 처리하지 않고 비공식 전의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밀은 보장되지만 개인이라는 걸 밝혀야만 사실은 징계까지 갈 때에는, 나를 숨기고 징계를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밝히고 징계위원회에 올릴 만큼의 그럴 만큼의 심각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접근성을 편안히 해서 빨리 올려서 밝히고 이렇게 준비를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또한 재심기구 및 시설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고접수절차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라는 걸 전제하지 않더라도 재심기구, 아니면 재심절차를 뒤서 단일 한 번이라도"(J/협회 위원)

"저는 지금 시설정보시스템 내에서 하는 이직 보고에 이직의 사유들을 갖다가 기재해주면 보다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이유로 이직하게 되었는지를 기재함으로 해서 그 판단을 새로 취업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의원면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냥 그만두는 걸로 문제 갈음하고 그만둬버리면 이런 것이 용두사미 되거나 그 기관에서 전혀 모르고 그 기관에서 상대방 전 기관에 전화문의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주관에 의해서 판단해 주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임면보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직 의 사유들을 갖다가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람의 구인도 그런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걸러낼 수 있는 나름대로 기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Y/협회 위원)

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위원 구성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혹은 회원자격에 대한 징계 모두 심의행위가 사회복지사에게 매우 중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구성방식은 노동자 대표 포함하는 방안(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E), 일선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집단(연구참여자 C), 인권전문가(연구참여자 E) 등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는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H)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해당 방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 가치라는 전제에서 도출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안에 법률전문가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노동자 대표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그 기구가 정말 법적으로 권한이 있고 그 기구에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힘가 그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기준 관념상 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게 실효성이 있는 기구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노조가 있는가도 사실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집단에서의 대표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C/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어떤 사회복지 노동자 대표도 사실 노동기구, 대표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노조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도 노동자대표의 형태로 들어가야 될 거는 같아요."(E/노인복지관 과장)

“인권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인권이랑 윤리 문제랑 진행될 것 같아요. 바로 취소되는 그런 게 아니면, 형식적이 되는 게 아니면 인권 전문가나 윤리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해서 여기다가 그다음에 현장 어떻게 맞추면 그 정도 최소 수준으로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E/노인복지관 과장)

“저는 그 정도면 사실 그냥 전문가도 그냥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야별로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안 올라올 정도면 차라리 거기에 옆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 노인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분야별로 하는 게 낫지, 아니면 전문 그쪽 영역별 교수님들이랑 현장 전문가들 포함할 수 있겠고, 징계위까지는 그렇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그 사안들이 그 분야에 대한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드러난 어떤 문제들이. 전 그래요.”(E/노인복지관 과장)

“그게 노조가 됐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런 조치는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같이 되지 않는 이상은 또 안 되지 않나.”(J/협회 국장)

“제가 봤을 때 법률가가 됐든지 인권 전문가 다양한.. 제대로 운영되려면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 여기에 물론 협회에도 2명이든 3분의 1 정도든,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 정도 해서 나머지 외부의 전문가로 해서 전혀 여기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공평한 심사가 되겠죠.”(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저는 특히나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부분, 그러니까 법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만, 사실 현장에서 침에 한 갈등은 사회복지사들 그 조직 안에서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순 자격증만 있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컨설팅을 해 줄 정도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G/협회부장)

“전 이거랑 또 별개로 아까 조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사관 같은, 그러니까 이름이 조사관이라면 조사관 같은 사람이 상시로 뭔가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교육원 쪽에서 뭔가 비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안들을 조금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는 않나.”(J/협회 국장)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기구와 그거를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J/협회 국장)

라. 책무와 권리의 균형 필요

사회복지사의 의무에 대한 미이행이 문제가 되어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무이행의 책무성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언급되었다. 사회복지사의 권리 침해 상황은 상급자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연구참여자 C), “블랙 컨슈머” 같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발생(연구참여자 D)하기도 한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A는 노무관계에서의 불합리성, 과도한 민원인에 대한 응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겼다.

“사회복지사의 권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좀 권리위원회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렇게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위에 상사한테 얘기했을 때 너의 잘못이 사실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상담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C/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분이 지역구를 다 다니시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한 특정직원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중략)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보호를 하기에 앞서서 그 직원이 먼저 그냥 억울하지만 내지는 그 상황이 쉽으니까 퇴사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D/요양원 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일단 기업처럼 변호사분들을 고용직 변호사를 채용하셔서 그 분들의 절대적인 법률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정말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협회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직접 변호를 맡을 수가 있고.”(A/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마. 윤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같은 징계처분절차 강화에 앞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겪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상담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안 별로 제보자들은 해당 문제가 실제로 윤리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되며,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 자체를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데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예방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의 윤리상담실을 검색해 본 결과 윤리상담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자원봉사시간을 입력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거철에 직원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공통으로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상담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심각한 윤리적 비위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1차적인 상담은 그게 진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심각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정도는 한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좋은 기구로써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기구로써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은 사실 내부고발을 하든 진정을 하든 건수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도.”(E/노인복지관 과장)

“만약에 윤리상담실 이런 게 있으면 기본적인 괴로움을 거기다 올리면 거기서 답변을 보면서 본인이 더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고민돼서 막 고민할 때 징계 이런 것보다 일단 한번 내가 어디다 토로할 곳이 필요한데 그럴 곳이 없었으니까 그동안에.”(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다가 윤리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글은 거의 올라와 있지 않고요. 샘플 예시로 그런 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처음 자원봉사자 관리하면 고민스럽죠. 봉사 안 하는데 봉사 시간 넣으라고 하면 거부해야 맞지만,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 거고 아닌 조직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작은 것들이죠. 선거 때 특히 직원들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혹은 작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바. 철저한 비밀 보장

또한 내부고발이 어려운 이유로 연구참여자 C는 “여기에 발 안 붙이겠다는 각오”가 필요할 정도로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후유증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정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윤리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보되어야 하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게 세상에 드러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를 내부고발 하게 됐을 때 모르느냐 다 압니다. 다 알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발을 안 붙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내부고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밀보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C/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어떤 기관에서는 내부고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이 예를 들면 출강 하는 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다 못 해 정말 3분의 2를 밖에서 돈을 따로 벌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내부고발을 했는데, 그 기관장은 정작 무슨 조치 이렇게만 내리고 아무 징계도 안 받고요. 이 내부고발자를 다른 걸로 엮어서 오히려 감봉인가 정직인가 3개월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사람들이 보호받을 어떤 이런 게 확실하면 정말 내부고발도 일어날 수 있고 자정노력을 하게끔 우리 협회 같은 데서도 그런 역할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4)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효력의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자격의 취소는 일단 사회복지사의 고용조건이 해소된 것이기는 하나, 노동관련 문제의 판례 상 취업 규칙에 전문자격 박탈로 인한 해고가 명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자에 대한 자동해고가 이뤄지기 어렵다. 향후 제도 도입 시 자격 정지 및 취소자에 대한 실질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가. 재취업이 가능한 상황

연구참여자 (E/노인복지관 과장), (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C/장애인 종합복지관 국장)은 실제로 취업 이후 자격 정지나 취소가 되더라도 해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비위문제로 특정 기관에서 퇴직한 사회복지사가 다른 기관에 취업한 경우를 제기하며, 실제로 자격 취소된 사회복지사가 이를 숨길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A는 근로계약서 등에 채용조건인 자격이 취소될 경우 자동 고용이 해고됨을 명기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병원들의 경우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기함으로써 실효성을 발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향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취업규칙 개정 시 반영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 추후의 문제는 저희가 시설치고는 조금 강력하게 대응하는 편이었는데, 문제는 다른 시설에 또 취직을 했다라는 거예요.”(E/노인복지관 과장)

“그래서 일단 취직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르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아동 관련 시설에서 지방에서 국장으로 일하다 오신 분이 아동 관련은 아니고 성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아서 자격 정지기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풀린 후에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국장급으로 다시 왔는데,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중략)……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그만둔 걸로 그런 케이스가 올 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C/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근로계약서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현행 현재 법도 없고 근로자기준법으로 하게 되면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해고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근로계약서 안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을 떠난다 이런 형태의 문구로 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A/종합사회복지관 팀장)

나. 맞고소의 가능성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에서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따라 취업규칙에 명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할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 등에 대해 맞고소를 할 가능성으로 인해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실효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예. 근로기준법으로 올라가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자, 그러면 만약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시간외수당 다 안 쳐줬다 이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제를 완화시키고 무마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다른 어떤 기관에도 우리가 문의가 오는 거죠. 취업을, 구직 의사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황은 알려주고 판단은 그쪽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어요.”(I/협회 위원)

5) 장기적인 해결방안

연구 참여자들은 자격 정지 및 취소 등과 같은 징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 취득절차 자체가 엄격해져야 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격 갱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있었다.

가. 교육의 강화

연구참여자 B는 사회복지사의 비위가 단순히 자격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관련한 교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H는 학교내 올바른 교육의 과정을 통해 정상적 사회복지사 배출 구조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게 정말 자격관리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자격취득과정에서 윤리와 철학을 더 강하게

학습을 시켜 가지고 뭔가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분명히 저희가 살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당할 일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보여지는 불쾌함이나 비윤리나 많겠으나 이것을 법적으로 적용해서 무언가를 한다,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과연 될까라는 거고, 오로지 제가 밀어붙일 거는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책무성에 따른 윤리의식 "니가 알아서 잘해야 돼" 사실 이거잖아요. 재교육 1년에 1번씩 하는 정도."(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그래서 만약에 성추행이다 그러면 성폭력 관련된 법으로 갈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면 개인정보보호법 가고 이렇게 각자의 법 영역으로 가서 뭔가가 연결되는 이런 고리겠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윤리성이 필요한데 이걸 다 세세하게 해가지고 법과 연결시키기 어려우니 그건 교육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일단 1차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 문제점 차원이 되든 어떻든 간에, 정말 철저하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라든지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학과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가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읊아매자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잘못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스스로 자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좋은데 저는 자격취소제도에 대한 암이 서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안내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J/협회 국장)

나. 자격취득 절차의 강화

또한 자격취득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현실 역시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운전면허증"처럼 쉽게 취득하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향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 보다 엄격하게 될 예정이지만, 이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규정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 H는 격을 취득의 과정까지도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

다고 하였으며, 자격취소 이후의 재취득 과정의 부분까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지금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쉽게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정도로,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운전면허증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갖고 이미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게 더 급할지, 이 자격취득과정을 더 꼼꼼하게 하는 게 급할지는 참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까요?”(B/지역아동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범죄가 있는 사람은 아예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그리고 사회복지사 중에 그런 행위가 있을 시에는 그냥 아예 영구취소에 가까울 정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A/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처음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91만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그냥 운전면허증보다 못한 사회복지사처럼 변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써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수요보다는 공급이 위낙 과잉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도 그런데 별에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입의 경로가 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자격제도위원회 위원장님 계시고 윤리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누구나 복지를 할 수 있겠으나 복지사는 아무나 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안 되는 행위에 규율된 내용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의 진입을 업격하게 제한을 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 아닐까.”(I/협회 위원)

“저는 자격취소를 넘어서 몇 년 간은 자격을 취득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법률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취소되고 다음 해에 바로 취득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하고 다시 시험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뭔가 구체화시키려면 자격취소된 이후...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300만 원 주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오늘 여

기 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숫자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인력들이 부족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자격증 하나 놓고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그런 걸 활용하거든요, 자격증 한 줄 넣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좀 갖춰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H/사회복지관련노조 국장)

"처음 사업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하는데 10명 중에 8명이 사회복지가 1차 전공이 아니신 거예요. 주 전공이 아니고 다른 전공. 심지어는 패션디자인, 스포, 마사지. 그런 학문을 평화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10분 중에 9명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한 과목. 요즘 표현으로 1도 안 보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복지 직 공무원시험에 사회복지 관련한 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니에요. 자격증만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교육과정, 사이버나 이렇게 해서 시간이수만 해갖고 따고 서 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I/협회 위원)

다. 자격갱신제도 도입

나아가 자격을 한 번 부여받게 되면 영구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범죄사실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스스로 실시하고 제출해야 자격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결격사유자에 대한 주기적인 스크리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격연장제도를 만들어서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정지 이런 게 아니라, 자격을 발급받은 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조회서를 협회에다가 제출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협회 차원에서 취소나 정지를 하는 이 중간에 뭔가 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A/종합사회복지관 팀장)

4. 소결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계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접집단면접에 참여한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금전적 비리, 성 범죄, 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자격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앞에서 언급된 범법 수준의 일탈 행위 외에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위반이나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 품위유지 위반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범법행위로서 법적 판결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불법행위로서 결정되는 자격 정지나 취소 외에 윤리적 측면을 다룰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징계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징계제도가 부자격자를 걸러냄으로써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이러한 징계제도가 그동안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및 교육기관 난립과 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과다배출과로 인한 사회복지사 전문성 위기 등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로 해석된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징계제도는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신고접수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판정을 내리게 되는 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징계제도 시행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귀 기울여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다섯째,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격 정지와 취소 못지않게 그에 따른 사후 조치

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정계 이후에도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재취업이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맞고소를 할 경우 신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판결로 마무리 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서 정교한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계제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의 인식 제고를 도모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격취득 절차부터 엄격성을 기하고 자격갱신제도를 통해 전문직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격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계제도도 그러한 일환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질 관리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과정, 자격증 보유 및 유지 과정, 그리고 정지 및 취소과정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이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과, 해당 입법의 취지인 사회복지사 자격의 질 관리와 윤리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제재효과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최후적 단계에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상 타인에 대한 손해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즉,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의 시행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의 윤리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이 쌍궤(雙軌)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의 요건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손해”의 범위는 결국 민·형사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품위유지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직무수행 상 손실”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포괄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요건 범위는 모든 비윤리적 실천을 포괄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회복지사의 ①고의성, ②직무수행 관련성, ③자격관련성, ④민·형사상의 입증된 손해라는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위의 4가지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자격취소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모든 비윤리적 행위를 포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포괄적 대응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 자격취소 및 정지요건의 입법취

지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법적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같은 ①행정처분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 ②회원자격의 징계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요건이 충족된 사회복지사의 비위에 대해 포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처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의 ①고의성, ②직무수행 관련성, ③자격관련성, ④중대한 손해²⁹⁾라는 자격 정지 및 취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포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법적 행정처분 대응체계에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예방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징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격 정지 및 취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복지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재하다. 또한 행정처분은 실제로 엄격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모든 비윤리적 행위를 법적 대응만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대응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윤리적 대응체계 구축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단체의 본질적 기능인 사회복지사 윤리 책무성 강화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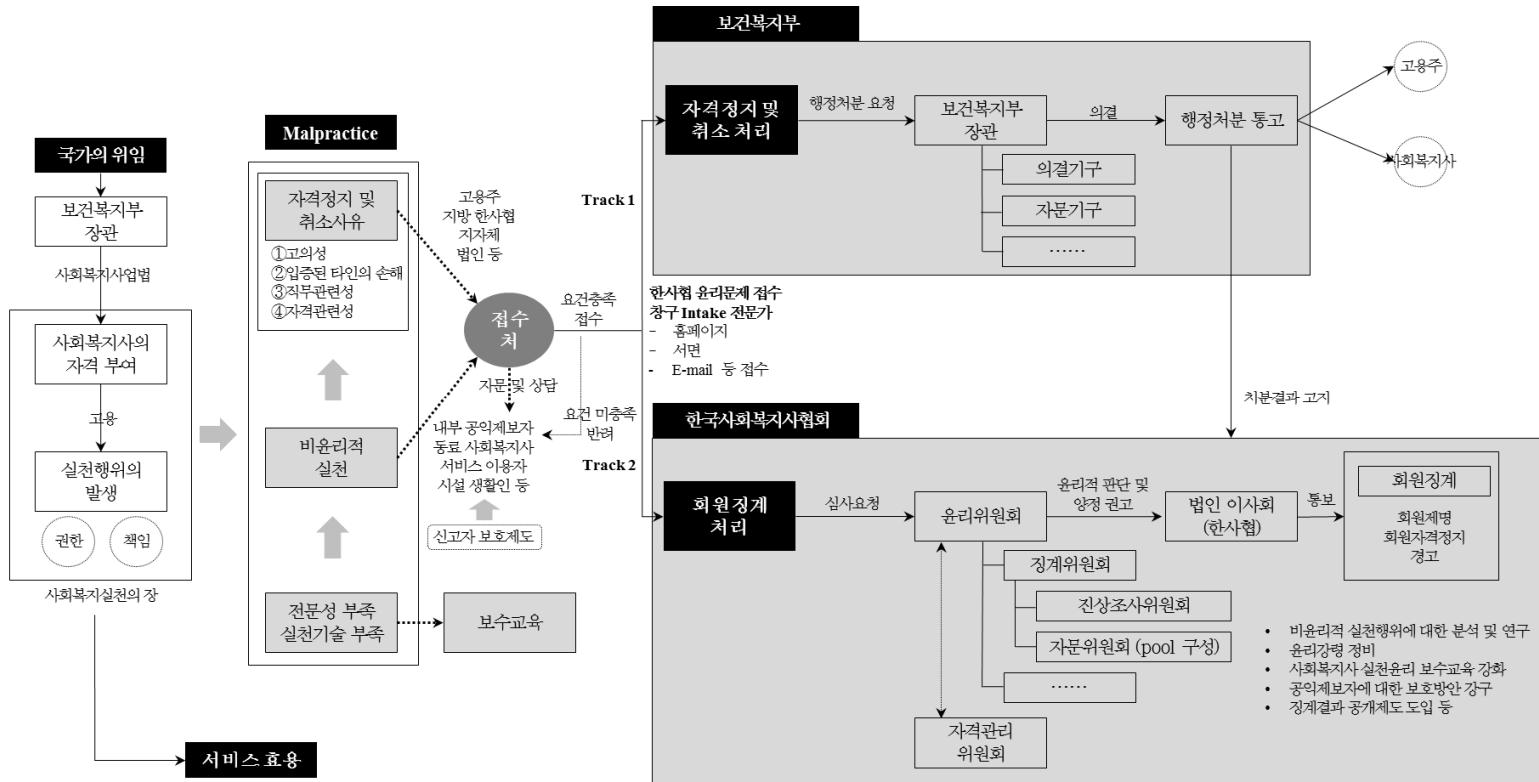
29) 중대한 손해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민형사상 입증된 손해라고 법률적으로 해석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윤채완 변호사 자문)

제1절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와 기관에서의 고용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실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국민복지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 위임으로 형성된다. 사회복지사의 실천행위는 국가자격부여라는 자격관련성, 그리고 기관 내에서의 업무수행이라는 과정성 등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이러한 실천의 장에서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malpractice)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위임된 국가책임의 불이행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실천오류는 전문성이나 실천기술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에서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로 명기된 행정처분의 조건은 ①고의성, ②민·형사상 입증된 타인의 손해, ③직무관련성, ④자격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②민·형사상 입증된 손해가 불확실한 비윤리적 실천에 대해서는 교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 중 전문성 및 실천지식 및 기술 부족이 원인인 경우는 개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 특히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를 포함한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 모델



1.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

사법대응절차와 윤리대응절차를 각각 별도로 접수하게 될 경우 개별 제보자가 사안 별로 제보창구를 해석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첫째, 이원화된 창구운영은 사법대응체계와 윤리대응체계 상호 간 면밀한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면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보자의 해석에 따라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윤리적 행위들의 일부가 사법대응체계로 제보될 수 있으며, 해당 사안들은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자격 정지 및 취소 심의 프로세스에서 반려될 것이다. 해당 사안을 사법대응체계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징계 대응 체계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비윤리적 실천행위에 대한 한사협의 자정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국가자격 정지 및 취소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회원징계 처리체계에 의뢰될 경우 해당 사안을 보건복지부로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누락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격 정지 및 취소사안은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포괄하는데 해당 사안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법대응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역시 포괄적으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관리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법적 자격에 대한 취소 및 정지처분의 요건은 제한적이어야 하나, 다양한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취합과 관리,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윤리실천에 대한 교육 및 자정기능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중요 기능임에도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사유를 중앙행정기관에서만 포착할 경우 해당 중대 사안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누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위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통합적으로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수창구가 필요하다.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비윤리적 실천행위의 부분집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수창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합접수창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통합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모든 사안들을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이 때 의뢰

경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첫째,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완료되어 형량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일차적으로 고용주, 지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 의해 해당 사안에 대한 포착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후원금 횡령이 포착되었을 때, 해당 사안을 지자체는 고발행위를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사회복지사가 벌금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안을 통합접수처에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중앙협회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고용주나 지방 한사협, 사회복지기관 운영 법인 등에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통합접수창구에 의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도마련 이후 보건복지부를 통한 공지를 통해 홍보하여 사안 발생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확인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행위는 주로 내부 공익제보자나 동료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 시설 생활인 등에 의해 제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 사회복지사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발하여 형을 선고받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통합접수처에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은 주로 공익적 제보의 속성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보호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통합접수처의 기능

제보되는 모든 사안을 통합접수처에서 기계적으로 자격 정지 취소 대응트랙과 회원징계 대응트랙에 의뢰하는 기능에 그칠 경우, 각 대응체계에서 무고하거나 단순 대응으로 종료 및 반려시킬 수 있는 사안까지 모두 심의하여야 하는 등의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본 연구 FGI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제소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실천과정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합접수처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한 일차적 상담과 자문기능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대응절차 역시 국가자격이 아닌 협회 회원자격에 대한 징계 절차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동료 사회복지사의 비위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제보자가 기관 내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비윤리적 행위에 동조하여야 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이 경우 접수처에서는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제보자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 역시 일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 상담기능이 접수기능보다 주가 될 경우 자칫 접수처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위 사실에 대한 대처관련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지방 협회나 관련 단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제보가 있을 경우 접수처에서는 필요 시 법률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담하는 역할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단, 접수처에서 민·형사상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확하게 자문기능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일차적 조사기능이 필요하다.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구체적 조사 절차는 각각의 대응체계에서 수행하여야 하지만 해당 제보사안이 사법대응절차로 가야 하는지, 윤리대응절차로 가야 하는지, 혹은 두 절차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접수내용을 근거로 일차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차 조사결과 제소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례를 반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접수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³⁰⁾. 또한, 접수전문가는 일차적인 조사상담과 대응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 수퍼 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대한 회원징계 방안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 요건이 충족할 경우 해당 사안은 불가피하게 비윤리적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자격 정지 및

30) 법률전문가를 상근직으로 운영할 경우 통합접수창구 운영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 풀을 구성하여 필요 시 자문 요청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취소 대응체계와는 별도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해당 사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징계체계에서 심사 및 회원자격의 징계처분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회원징계체계의 실질적 권한은 행정처분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며, 비록 자격 정지 및 취소가 사법대응체계에서 기각되더라도 회원의 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체계: 보건복지부

1.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첫째,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민·형사상의 입증된 손해, 즉 구금 혹은 벌금형 선고와 확정이 이뤄질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손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의 관련성”은 통합접수처에서 의뢰 시 접수처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고의성”은 법원 판단 시 직무 상 과실인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직의 자격 및 면허의 정지 및 취소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는 “업무수행 중 타인에 대한 손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업무관련성”에 추가로 “자격과의 관련성”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이 자격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의 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해석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두 사회복지자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모든 직무는 업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³¹⁾.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고의로 발생시킨 민·형사상 손해는 모두 자격관련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실제로 입법취지인 “자격관련성”을 추가로 포함시킨 입법취지를 반영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포괄적 해석의

31) 2018.4월 시행예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중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펴보면,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업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자격관련성을 함께 만족하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경우, “업무수행”이라는 단서조항만으로 충분할 것에 대해 “자격과의 관련성”까지 추가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적 직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병원 내 행정 테스크포스 팀에 차출되어 일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형량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는 업무 수행 중이기는 하나 “자격관련성”이 있는지 해석이 모호해지게 된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업무수행 중 행하는 모든 것이 자격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사회복지사는 자격 정지 및 취소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해당 업무는 자격관련성이 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직장 내 징계는 가능하겠으나, “자격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모든 업무속성을 자격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표 34. 사회복지사의 직무관련성과 자격관련성에 대한 해석 비교

방안	장단점
(1안)포괄적 해석	제보자의 해석과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모든 확정 형에 대해 스크리닝이 가능.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에서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성이 존재.
(2안)제한적 해석	자격관련성과 관련하여 통합접수처의 해석을 통해 일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무고한 제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자격관련성이 존재하는 자격 정지 및 취소대상이 포착되지 아니할 가능성성이 존재함.

포괄적 해석과 제한적 해석에 대한 비교는 <표 34>와 같다. 포괄적 해석을 지지할 경우, 통합접수처의 해석과 판단이 최소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금고 혹은 벌금형 확정 시 대부분의 사안을 자격 정지 및 취소를 심의하는 기구에 통합접수처에서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심의기구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자격관련성”을 추가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의 행정력과 조사기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또한, 법률 해석에서 “자격관련성”을 추가한 것의 입법취지가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또한 야기된다. 제한적 해석을 지지할 경우, 일차적으로 제보자가 “자격관련성”과 관련한 해석을 한 후 자격 정지 및 취소 요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혹은 무고한 제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격관련성”이 존재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가 누락되지 아니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제한적 적용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록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 강화와 자격의 질 관리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자에 대한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대책과 자격의 질 관리 노력이 제도도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최후적 수단으로서 자격의 정지와 취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 상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는 법률 상 근거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그 행정처분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의해 자격취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의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가 소멸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격취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용 상태의 박탈이라는 강력한 제재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³²⁾. 또한,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자격의 일시적 정지로 인한 사회복지직무의 배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일시적 자격 정지에 그치지 않고 퇴직압박 등의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큰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기반을 둔 ①고의성, ②업무관련성, ③자격관련성, ④민·형사상의 손해라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32) 우리나라의 판례 상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당연 퇴직의 하나로 ‘관련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거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 43866 판결 후 일관된 판례 태도). 이는 해고가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가 노무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설장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 아동복지법과 같이 법도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법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새로미 변호사 자문의견서).

서 자격 정지 및 취소가 이뤄질 경우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에 앞서 사회복지사의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선행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횡령이나 유용 등은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에 앞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자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 역시 범죄사실이 입증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적 처벌을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의 선행조건으로 포함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충분한 법적 판단 이후에 자격 정지 및 취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입법정신에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FGI에서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라고 여겨지는 손해를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비위행위들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 상에 근거한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처분조건이 될 수 없다.

법률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통념 상 민·형사상의 손해가 입증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의 비위행위를 자격취소 및 정지 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향후 법률개정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서 “7. 기타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같은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 포괄조항 역시 일정한 구체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품위유지위반”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금지조항을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에 대한 심의절차

1) 심의기구의 구성

가. 심의의결기구

심의기구에서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접수 사안에 대한 조사, 청문 및 징계절차 진행, 행정처분 요청 및 통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심의기구 기능의 핵심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위원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으로 부

터 추천을 받아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준용하여, 심의기구 내 심의위원을 홀수(7인 혹은 9인)로 구성하여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양형 공정성 및 법적 논리모순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짹수위원(4인 혹은 6인)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물로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 구성한다. 징계위가 자칫 사회복지사의 비위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분야(예-아동, 노인 등) 별로 추천을 통한 인적구성을 하기 보다는 노-사 관계를 중심으로 시설단체와 노동단체로 구분하여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자문기구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 요건 충족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분의 엄격성을 고려해 정상참작 등의 상황이 가능한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심의절차

가. 심의

심의의결기구에서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행하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심의를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 자문기구의 자문을 통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심의기구의 장은 피 제보 당사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청문절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피 제보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거부할 경우 심의기구의 장은 직권으로 혐의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심의절차에 착수하여 의결한다.

나. 행정처분의 요청 및 시행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의 결정이 의결되면 심의기구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의 효력 발생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사회복지사 당사자와 고용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의 취소결정은 고용조건이 자동 소멸되므로 고용기관에서는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동 해고가 결정되어야 한다. 단, 통고처분 당사자의 최초 고용 당시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한 기관 내에서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해 사회복지관련 직무 배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시 고용조건의 일시정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직무 배제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나 간호사, 의사 등과 같은 타 전문직종의 경우 면허정지 시 직무정지를 통해 업무 배제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조직 내에서 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직무의 사회복지 직무관련성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 면허정지 변호사의 검색 기능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설정되어 있어 변호사가 임의로 면허정지상태에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를 홈페이지 상 검색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수혜자가 검색 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로 직무배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는 직무정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공지를 통해 최소한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처분결과를 지역주민 등 의 이용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을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취소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마찬가지로 최초 고용의 조건이 자동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결정이 이뤄져야 하나, 고용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기관에 판단을 맡겨야 할 것이다. 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고용기관의 장에게 자격취소의 결과를 고용기관에 문서로 함께 통고하여 자격 취소 처분된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시 현실적으로 과잉 처벌될 가능성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병원이나 학교의 경우 사회복

지사가 1인 혹은 최소인원으로 고용되어 있어, 이들의 자격 정지를 실제로 직무 정지로 해석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단이 부재할 수밖에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자격 정지가 의도하지 않게 해고나 과도한 당사자의 고용불 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비록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해고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고 처리됨으로써 과잉 금지될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사회복지사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 절차

1) 접수 과정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은 통합접수처에서 윤리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윤리위원회가 사례에 대한 접수를 통해 개시된다.

2) 윤리위원회의 대응절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윤리적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산하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원 징계심사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단, 윤리위원회가 단순히 징계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와 자문, 국제교류, 윤리강령 개정 등과 같은 다양한 폭넓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산하에 징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위에서 회원징계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며, 윤리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보사안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다. 통합접수처에서의 일차조사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필요 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안 별로 분야 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풀을 구성하고 필요 시 자문을 요청하여 회원 징계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자격관리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회원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징계수준을 양정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면, 윤리위원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법인 이사회에 윤리적 판단 및 징계수준 양정안을 권고한다. 회원징계는 ①회원제명,

②회원자격 정지, ③경고로 구분하고, <표 35>에 제시한 각각의 대략적인 양정기준을 참고로 징계위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양정의 합리성을 고려해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윤리적 판단 및 양정권고안에 대해 법인 이사회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가부로 의결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에 대해 통보함으로써 회원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비해 회원징계의 경우 실질적 효력발생의 가능성이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회원 징계결과 공개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5. 사회복지사 회원징계 유형 및 기준(안)

징계종류	기준
회원 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며, 반성의 여지가 없거나 혹은 반성의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 수준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회원 스스로 반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소 상당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 수준이 다소 경미한 수준이나, 회원 스스로 반성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회원 스스로 반성의 여지가 있으나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 수준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2. 장기적 개선방향 제언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라는 사후적 조치와 더불어 반드시 사전적 예방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인력 공급의 과잉 상황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격취득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사후적인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만을 통해 자격의 질 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효용이 낮을 것으로 여겨진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제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자격취득 절차 개선과 고용 신고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절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

격취득 조건은 교육의무 이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이 갖는 윤리적 책무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 등에 의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범죄사실을 보유한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고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법적 효용을 지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죄사실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자체에 제한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즉, 고용 시 스크리닝을 통해 고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보다 선제적으로 자격 취득 자체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고용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학교의 교육복지사나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취득과정에서 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고용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발급기관이 아니라 대행업무 수행기관이기에 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통제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 종사자 자격제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에 대해 자격취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고용 이후 이들의 실천 행위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비위사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재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고용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라는 특정 기관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회복지사에 비해 각 시군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지역아동센터, 재단 및 비영리단체 등과 같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고용 범위가 넓은 점, 또한 향후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고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제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수교육 의무화를 포함시키고, 보수교육 미 이수 시 전문자격 정지 및 취소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과 같은 포괄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상 고의성, 업무관련성, 자격관련성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된 손해라는 4가지를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손해입증이 쉽지 않은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이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제 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세부 매뉴얼을 제시하여 법적용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문헌 분석,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자격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상시 확인 및 규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 이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면허형 자격이 아닌, 의무고용형 자격의 특성을 갖고 있어 시장에 의해 경제활동을 통제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사례를 미국, 영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격제도의 운영은 영국과 미국이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매우 다르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매우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우 유사한 자격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은 자격취소 절차에 있어서 일정 수준 직능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본과 호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나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격제재 체계도 명료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

협회의 자정노력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와 법적으로는 유사하게 허위나 부정한 사실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은 경우와 그 외 신용 손상이나 비밀 누설과 같은 경우 자격 정지나 취소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입법미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셋째, 타 전문분야의 자격제도를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법조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건의료분야와 교육분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크고 자체적인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능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이므로 자체규제에 상당히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타 전문분야는 징계대상자의 청문절차 확대 도입, 징계위원회 구성요인의 다양성 확보, 징계종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리적, 법적 위반사례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간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현황과 현장의 경험과 대처를 살펴보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금전적 비리, 성 범죄, 폭력과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위반이나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 품위유지 위반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자격 정지 및 취소를 비롯한 징계제도가 부자격자를 걸러냄으로써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현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징계제도의 신중한 도입과 엄격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다섯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 자격취소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 세부기준 운영방안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실천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체계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 체계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2절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개선방안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적 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타 전문분야 자격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대응 체계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 체계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의 핵심적 내용이 곧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의한 엄격한 적용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직능단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기반한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통합접수처를 마련하여 모든 사안들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완료되어 형량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일차적으로 고용주, 지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 의해 해당 사안에 대한 포착이 이뤄질 것이므로, 해당 사안을 통합접수처에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중앙협회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는 고용주나 지방 한사협, 사회복지기관 운영 법인 등에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통합접수창구에 의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제도마련 이후 보건복지부를 통한 공지를 통해 홍보하여 사안 발생 시 누락되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형사상 손해입증이 확인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행위는 주로 내부 공익제보자나 동료 사회복지사, 서비스 이용자, 시설 생활인 등에 의해 제보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통합접수처에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사안들은 주로 공익적 제보의 속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므로,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보호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통합

접수처의 기능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한 일차적 상담과 자문기능이며, 일차적인 조사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접수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복지윤리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심의의결기구와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자에 대한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심의의결기구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행하여 자격 정지 및 취소와 관련한 심의를 수행한다. 심의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하여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양형 공정성 및 법적 논리모순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 요건 충족이 이뤄지더라도 행정처분의 엄격성을 고려해 정상참작 등의 상황이 가능한지,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심의와 자문과정을 거쳐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의 결정이 의결되면 심의의결기구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윤리위원회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회원 징계심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윤리위원회는 산하에 징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에서 회원징계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며, 윤리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보사안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 징계처분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징계처분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자격제도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윤리위원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법인 이사회에 윤리적 판단 및 징계수준 양정안을 권고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회원징계는 ①회원제명, ②회원자격 정지, ③경고로 구분하며,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대략적인 양정기준을 참고로 징계위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양정의 합리성을 고려해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의 윤리위원회와 자격

제도위원회의 역할에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수정 보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이라면, 앞으로의 논의는 보다 장기적 관점과 법제도의 개정 및 시스템의 적극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질 관리의 측면, 법제도 개정의 측면, 시스템 보완의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질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가 사후 조치의 관점을 갖는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이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조건은 교육의무 이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이 갖는 윤리적 책무와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고용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기관이 아니라 대행업무 수행기관이기에 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통제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고용범위가 넓은 점, 또한 향후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고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인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무화 역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제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수교육 의무화를 포함시키고, 보수 교육 미 이수 시 전문자격 정지 및 취소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과 같은 포괄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사유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상 고의성, 업무관련성, 자격관련성뿐만 아니라 중대한 손해라는 4가지를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은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격 정지 및 취소처분이 불가능 하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요구된다. 또한,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국가자격이며, 윤리강령을 지닌 전문자격이다. 즉,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유사 전문가직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의 현행 규제는 합목적성을 지닌다 하겠다. 문제는 규제 해소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법조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자격 발급 기준에 준하는 해소 절차를 규제일 이후 다시 획득하는 방식(학력 요건, 이수교과목 요건 등) 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연동한 규제 해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보 전산시스템에 정지 기간 입력, 자동복권, 취소자 등 규제자 관리 측면 반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선 사회복지사가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3항, 시행일: 2018.04.25.)는 법조문이 있긴 하나, 자격 규제와 경제활동이 별개인 측면을 고려해 자격 규제 경중에 따라 복합 규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경한 위법 사례로 자격 규제를 당한 자는 자격 재취득과 시장 재진입 모두 가능케 하고, 약간 중한 경우에는 자격 재취득은 가능하나(2년 지난 뒤 일부 교과목 재이수 방식, 보수교육 일정 시간 이수 방식 등) 일부 시장 재진입은 어렵게 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호 개별법령 개정), 매우 중한 경우에는 자격 재취득은 물론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음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범위에서 완벽히 퇴출하는 규제 방식 등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사법, 행정 등 관련 기관과 수시로 개인 정보를 공유, 공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한 해에만 새로 등록되는 건수가 8만여 건, 이미 등록된 건수가 93만여 건이 넘으므로 그 시스템은 원스톱 전산화 등의 방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으로 걸려지거나 추출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사회복지사 자격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산프로그램이 자격 정지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없는 등 현행법상 위탁업무(발급업무) 중심의 시스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난제로 꼽힌다. 아직 사망자도 정리되지 않은 게 사회복지사 자격 정보 전산 시스템의 현주소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시행일 2018.04.25.)된 것은 작게나마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제도의 세부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전체의 질적 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내외 사회복지사 및 타 전문분야의 자격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긴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자격 정지 및 취소 상황과 사회복지사의 비윤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취득 절차의 개선과 관리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범수. (200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2(3), 55-73.
- 김범수, 허준수, 이기영, & 최명민. (200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교육*, 2, 1-38.
- 보건복지부(2015).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7). 2017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엄상현. (2016). 교원 징계 사유 및 징계 처분과 교원 관련 특성 요인 분석-○○ 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8(2), 101-120.
- 이봉주, 강홍구, & 최명민. (2011).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준영 외.(2015).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하명호. (2016).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49, 51-79.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5). 사회복지사리서치패널단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 및 훈련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6).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6). 사회복지사리서치패널단을 활용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7).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 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AASW. (2016). AASW By-Laws on Ethics. 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AASW. (2014). NRAS and the National Regulation of Social Work: Implications for social workers in non health settings. 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AASW. (2010). Code of Ethics. 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HCPB. (2014a). Standards of education and training. Health &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 (2014b). Standards of education and training guidance. Health & care professions council.

金圓景ほか. (2017) . 「日韓社會福祉教育の現況と課題：筑紫女學園大學と白石大學校を中心」 『筑紫女學園大學教育實踐研究』 第3号、81-87

厚生勞働省. (2014). “社會福祉士について”. 第6回福祉人材確保対策検討會

참 고 사 이 트

<https://www.aasw.asn.au>

<https://www.basw.co.uk/social-work-careers>

<http://www.regents.nysed.gov>

<http://joboutlook.gov.au/Occupation.aspx?search=Industry&Industry=Q&code=2725>

<http://www.hpc-uk.org>

<http://www.hcpc-uk.org/>

<http://www.koreanurse.or.kr>

<http://www.op.nysed.gov>

<https://www.prospects.ac.uk/job-profiles/social-worker>

[http://www.jacsw.or.jp/01_csw/index.html.](http://www.jacsw.or.jp/01_csw/index.html)

법 령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자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 법률자문**

윤채완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김새로미 변호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조정본부 과장)

*** 국내자문**

김기덕(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해외자문**

손해인(LCSW-R/CASAC, Social Work Supervisor,
Creedmoor Psychiatric Center, NY, USA)

김원경(School Human Sciences, Chikushi Jogakuen University,
JAPAN)

박홍재(RSW School of Social Sciences & Psychology
Western Sydney University, AUSTRALIA)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 원 : 보건복지부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2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강로 3가, GS한강에클라트)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 302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02-786-0845
